

연구총서 14-AA-11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

박학모 | 김대근 | 이규창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 간 사

최근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을 대비한 각 분야 역량의 강화를 통해 통일준비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준비와 통일역량의 제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을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의 사법통합과 사회통합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통일에 대비하여 사법통합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미리부터 그 역량을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이 남북한 통일시대의 비전속에서 사법통합을 비롯하여 남북통일과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통일의 준비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연구로서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조명하게 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형사사법제도는 대내·대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 북한형법의 규범적 측면의 변화를 평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통합을 염두에 둔 북한형사사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박학모·김대근 부연구위원과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예비연구가 지속적인 사법통합 관련 연구 성과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박학모)	17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김대근)	23
제1절 체제 비교의 방법	25
1. 들어가면서	25
2. 비교 방법의 의의	27
가. 비교법적 방법의 개념	27
나. 비교법적 방법의 유형	28
다. 비교의 목적	30
3. 체제에 따른 거시적 비교	31
제2절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33
1.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연구 방법	33
2. 사회주의 형사법체계의 특성과 일반 이론	34
가. 사회주의의 법이론	34
나. 사회주의 형사법체제에서 죄형법정주의 개관	37
제3절 실재한 사회주의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사례	40
1. 서설	40
2. 소련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0
3. 폴란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2
4. 헝가리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4
5. 루마니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5
6. 소결	46
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46
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적 성격	47
다. 사적 경제행위 및 사회적 재산침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	48

라. 개인적 법익 및 인권에 대한 경시	48
제4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평가	49
1. 북한의 일반화된 법이론 개관	49
2.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관계	50
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부로서 북한법	50
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법의 합리성 검토	51
다.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차이	52
3.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 평가	55
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	55
나.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평가	56
4. 소결 - 북한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59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박학모·이규창)

제1절 북한형사사법과 헌법 및 초헌법적 규범의 의의	63
1. 헌법과 북한형사사법	63
2. 초헌법적 규범과 북한형사사법	66
제2절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형법의 변화·발전	68
1. 북한형법의 발전과 변화	68
가. 1950년 북한형법의 제정	69
나. 1974년 형법개정과 형법 강화	71
다. 1987년 형법개정과 형법 완화	74
라. 2004년 형법 전면개정과 패러다임 변화	76
마. 2007년 형법부칙에 의한 형법개정의 “반동성”	80
바. 2009년 북한형법개정의 정치성	82
사. 2012년 현행 북한형법	83
2. 형사정책과 형법 사이의 북한형사실체법	83
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의 북한형법	84
나. 형법의 한계로서의 형사정책?	86
다. 범죄와 제재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위험성’	87
라. 계급형법적 이원주의형사제재	88
제3절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개관	90
1. 최근 북한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 한계	90
2. 북한형사사법제도의 주요 특징	92

가. 재판의 독립성 부정과 재판에 대한 당적 영도와 통제	92
나. 배심제도의 배척과 인민참심원제도의 채택	93
다. 편의관할로 인한 심급제의 약화	94
라. 검사에 의한 재판감시의 제도화	95
3. 북한 형사사법제도상 특수 제도	95
가. 현지공개재판(인민재판)	95
나. 유사형사재판제도	96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이규창) ... 99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지속	101
1. 인민재판소의 확대	102
2. 특별형사재판제도의 변화	103
3.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강력한 반발	106
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표	106
나. 북한 고위 관리 및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 언급	107
다. 북한의 반발	108
4.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 부인	112
5. 재판 없는 형벌 부과 및 집행 지속	114
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115
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116
제2절 형법의 변화와 지속	117
1. 형법총론 분야	118
가. 형법의 목적 및 계급적 원칙	118
나. 형사책임	119
다. 형벌(형사제재)	121
라. 양형	123
마. 형벌의 면제	124
2. 형법각론 분야	126
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27
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27
다.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29
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39
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41

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45
사. 국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46
제3절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상의 변화와 지속	149
1. 형사소송법 개정의 특징	151
가. 증거와 관할 및 변호의 중요성 인식	151
나. 기간 조정	152
다. 판결판정 집행 절차 구체화	155
라. 기타 개정 사항	155
2. 최근의 동향과 실태	157
가. 수사정보화 강조	157
나. 간접증거의 강조	158
다.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양태 변화	159
라. 외국인 재판 및 판결 집행	160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박학모)	165
참고문헌	171
Zusammenfassung/Abstract	181

표 차례

〈표 3-1〉 2004년 북한형법상 개별구성요건 명확화·구체화 사례	77
〈표 3-2〉 구성요건 및 형벌 세분화의 예	78
〈표 3-3〉 2004년 북한형법상 형벌의 변화	80
〈표 3-4〉 북한형법 개정과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규정의 변화	86
〈표 3-5〉 북한형법 개정과 ‘형법의 임무’ 규정의 변화	87
〈표 3-6〉 북한형법 개정과 범죄 및 ‘사회적 위험성’개념의 변천	88
〈표 3-7〉 북한형법상 형벌의 종류의 변화	89
〈표 4-1〉 북한 형사재판의 관할 및 심급제도 비교	105
〈표 4-2〉 북한 형법상의 범죄 일반규정 비교	120
〈표 4-3〉 북한 형법상의 형벌 규정 비교	122
〈표 4-4〉 북한 형법상의 양형 규정 비교	124
〈표 4-5〉 북한 형법상의 형벌의 면제 규정 비교	125
〈표 4-6〉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개정 조항 비교	127
〈표 4-7〉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28
〈표 4-8〉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30
〈표 4-9〉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32
〈표 4-10〉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37
〈표 4-11〉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38
〈표 4-12〉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39
〈표 4-13〉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42
〈표 4-14〉 직무상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44
〈표 4-15〉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45
〈표 4-16〉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47
〈표 4-17〉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148
〈표 4-18〉 북한인권 침해사건 발생 장소	150
〈표 4-19〉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체계 비교	151
〈표 4-20〉 북한 형사소송법의 기간 비교	154
〈표 4-21〉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163

국문요약

이 연구는 여러모로 확인된 남북한 형법과 형사사법제도의 크고 깊은 이질화의 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을 위한 잠재성의 일단을 안으로부터 찾아내려는 시도로서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형사사법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을 보면 북한형법에 대한 일반론적이고 기술적인 서술과 언급, 사회주의형법이론 또는 주체형법이론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를 표적으로 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상호이해의 지평을 열어두고 통합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 확연하게 그어진 어떤 타부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위축과 신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북한형법연구에 공통된 통일조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훌륭한 연구목적 이 사실상 통일도 통합도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결론으로 치닫는 배경은 동화(同化)의 결과만을 고집한 나머지 “자신을 상대화하는 투사(投射)”의 노력은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을 다시 곱씹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정지작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북한형법연구 또한 숙명적인 냉전적 남북대립의 틀에 갇힌 동화적 태도가 아닌 투사하는 열린 자세로 나아갈 때 이질성의 골을 넘어 남북의 법 질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법의 이해는 하나의 비교법연구로서 정치·사회·역사·문화 등 심층적 사유를 배경으로 한 법규범 및 제도의 이해이며, 법체계에 담긴 법원리들을 인지하여 그 내용을 규범적으로 가공해내는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유념함으로써 이 연구는 북한형사사법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에 유의미한 특징들을 발굴해가는 이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각 장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비교라는 방법론의 의의와 필요성을 간략하게 다룬 후,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성들을 검토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를 고찰한 후, 사회주의 체제 내적 관점을 통해서 북한

12 •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시론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법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체제 내적 관점에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작업은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비판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현재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기획하는 미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제도가 갖는 특징과 변화·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을 살펴본다. 북한은 2009년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헌법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헌법은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이라는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북한헌법도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1950년 이래 북한의 형법개정 내용은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북한형법의 변화와 발전을 기늬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4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였다.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축적된 관계로 북한형사사법제도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크게 형사사법제도와 형법, 형사소송 및 형 집행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인민재판소를 확대하고 형사특별재판에서 있

어서는 군수(軍需)재판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형사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없는 형벌 부과와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19일 형법(구형법)과 2012년 5월 14일 형법(현행형법)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형사소송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피고인)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을 통해 판결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와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법 자체의 문제점 및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의 절반가량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구 사회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와 같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약 90%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하는 현대형법학에 통용되는 “형법과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관계”에 대한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일컬어지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일

14 •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 나아가 노동당의 형사정책이 초법규적 규범의 기능을 하며 형법과 형사사법의 형사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형법, 즉 북한형사실체법의 개정을 개관하고 현행 북한형법을 ‘이해’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주체의 형법이론’에 토대를 둔 사회주의형법으로서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극으로 치닫던 시기인 1974년 형법개정과 일부 ‘반동성’을 보인 형법개정을 제외하면 북한형법 또한 “의외로” 현대형법으로의 큰 물줄기를 따라 변화·발전하며 진화해 온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실현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에서 뒤늦게 논의된 ‘재사회화형법’, ‘회복사법적 형법’의 맹아(萌芽)도 북한형법과 형사사법에 배태되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형법의 암덩어리처럼 비난받아온 유추 규정이 폐지되고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형법각칙의 구체화, 명확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며, 그 시너지효과로 순화된 ‘사회적 위험성’ 개념과 표지도 부분적으로 비범죄화의 영역을 비롯하여 형사정책적 순기능의 잠재력을 보이며 범치국가적 법이론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규정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등 형법을 현대법치국가적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괄목할만한 입법을 단행하여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일반범죄 가운데 사형해당범죄를 대폭 확대하고 2009년 형법개정을 통해서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반동적 입법행보”를 거듭하며 우려를 자아내었으나, 2012년 각론분야의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전반적으로 형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범죄분야에서 두드러져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처벌의 완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으며 집권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사실체법, 즉 북한형법의 발전양상과 사뭇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 북한 형사사법의 현실이다. 물론 형사재판의 실태에 있어 공개처형이 형사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고, 일부 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피소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 아니라 유나 리 재판의 경우 국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절차가 대체적으로 준수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인민보안부 포고에 의해 공개처형하고 있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도 여전히 있다. 영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인 유나 리에게는 보장하고 남측 주민에게는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문제도 북한 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법치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형사사법의 모습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의 핵심적 요소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회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강제노동에 있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서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와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등에서 노동단련을 받는 경우의 2가지가 존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치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정치범 판결을 한다는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이 증언이 사실인 경우 정치범과 일반범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 북한 형사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지의 여부, 보위부 사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지, 상소는 가능한지의 여부 등이 추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형사재판제도인 군사재판제도와 철도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 이 제도들과 정규 재판제도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지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관

계라든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검찰, 인민보안기관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과 관련된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와 연결고리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 및 인민보안단속제도와 유사재판제도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및 동지심판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다면 작동 메커니즘은 어떤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소 알려진 문제사안 뿐 아니라 전혀 알려지지도 소개되지도 않은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손해보상제도와 의료처분과 같은 제도의 실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술한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예비연구로서 이 연구과제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형사사법통합이라는 먼 길을 향한 작은 출발이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 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

박 학 모

제1장

서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

북한형사법 및 형사사법에 대한 연구·논의가 비교적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라 할 수 있는 1990년 배종대 교수는 앞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이 한결같이 북한 형법연구를 통일조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공통된 연구목적에 내세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북한형법질서에 긍정적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공통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북한형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와 난조를 보이는 상황을 개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적 결론의 배경이 “상대를 자기화 하려는 동화(同化)”의 결과만을 고집한 나머지 “자신을 상대화하는 투사(投射)”는 거부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적시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정지작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북한형법연구 또한 숙명적인 남북대립의 틀에 갇힌 동화적 태도가 아닌 투사적인 열린 자세가 있을 때 이질적인 남북의 법질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¹⁾

당시에나 지금이나 다분히 이단아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지적이야말로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을 생각하는 연구에 있어서 유념하고 견지해야 할 태도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북한형사사법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자,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형사사법통합 노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엘스터(Jon Elster)는 새로운 제도의 기획과 관련하여 제도디자이너, 즉 제도기획가의 심리학적 동기가 제도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성공적인 제도디자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디자이너의 심리학적 삼각요소로 이성, 이해(관계), 감정을 들며, 제도디자이너가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불합리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며 불편부당한 이성에 따라 심의하는 제도디자인의 조건과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²⁾ 통

1)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1990, 38쪽 이하.

일한국의 헌정제도디자인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이러한 제도디자인의 조건과 과정은 통일시대의 남북한 형사사법통합, 즉 ‘통합적 형사사법제도의 디자인’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북한형사사법 이론과 실제의 괴리와 좁힐 수 없는 남북 간의 이념적 간극을 이유로 북한형사사법제도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용적인 평가와 ‘이해’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일방적, 동화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두 국가, 사회 및 제도의 통합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통합의 ‘사물의 본성’에 대한 몰이해, 나아가 ‘통합의 역사가 남긴 교훈에 대한 역사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시도라 할 것이다. 통합의 이름을 빈 일방적 이해(利害)의 관철이 아닌 이상,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이해’(理解)와 소통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통합의 과정과 완성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³⁾ 이해는 상대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큰 차이점이나 아주 작은 공통점이라든지 작은 긍정적 발전을 민감하게 포착해내고 호평해 줄 수 있을 때, 이를 이해와 소통의 동지로 삼아 통합의 보금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부터 이 연구는 이미 확인된 크고 깊어가는 남북한 형사법의 이질화의 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보다는 그 사이 축적된 북한형사법 및 북한형사제도에 관한 자료정리와 연구를 토대로 큰 차이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통합적 잠재력의 일단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최근 술한 정보원(情報源)을 통하여 북한 내 인권침해의 실상과 의문스런 형사사법 운용실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4 북한인권백서」⁴⁾,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4」⁵⁾, 그리고 2014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⁶⁾ 등 올해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북한인권 관련 조사보고서들이

2) 임혁백, “통일한국의 헌정제도 디자인”, 아세아연구 통권 제101호, 1999, 305쪽 이하에서 재인용.
 3) 물론 이러한 이해가 북한형사사법, 나아가 그보다 초월적인 이데올로기와 권위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각종 형사사법 관련 반인권적, 반법치국가적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나 정당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2014.
 5)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 2014.
 6) 통일연구원, 201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014.

쏟아져 나오며 북한 내 인권침해실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북한형사사법제도 운용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른바 ‘김정은시대’ 북한형사사법의 운용실태를 짚어보며, 다른 한편으로 형사사법체제에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면서 형사사법통합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북한형사사법제도와 그 변화에 담긴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사점, 활용가능성 및 변화필요성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형사사법의 연원과 그간의 제도적 발전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형사실체법인 북한형법을 중심으로 북한형사사법을 지배하는 원칙과 형사제재의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법인 북한형사소송법과 그 밖의 절차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이미 1993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 형사관계법 -」⁷⁾, 그리고 1996년과 2006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북한사법제도개관」⁸⁾ 및 「북한의 형사법」⁹⁾이 있으며, 최근의 통일연구원 보고서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¹⁰⁾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개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특징과 변화·발전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북한법 이해는 하나의 비교법연구로서 정치·사회·역사·문화 등 심층적 사유를 배경으로 한 법규범 및 제도의 이해이며, 법체계에 담긴 법원리들을 인지하여 그 내용을 규범적으로 가공해내는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접근법¹¹⁾을 유념함으로써 이 연구는 북한형사사법에 내재하는 형사사법통합에 유의미한 특징들을 발굴해가는 이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7)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형사관계법-, 1993.

8)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9)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006.

10)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11)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2005, 452쪽 참조.

12) 여기에서 북한원전문헌이나 북한법령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우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와 맞지 않더라도 북한식표현법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원문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만, 가독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을 허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고의적중살인범죄’를 ‘고의적 중살인범죄’로, ‘고의적중살인죄’는 ‘고의적 중살인죄’로, ‘프로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로, ‘화폐’를 ‘화폐’로, ‘테러’를 ‘테러’로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

김 대 근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

제1절 체제 비교의 방법

1. 들어가면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자본주의 법체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와 상이함은 물론,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상이하다’, 혹은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를 의미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비교’ 내지 ‘대조’라는 방식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일 뿐인 것이다. 다만 비교의 대상이 지향하는 바와 제도적 실천이 부합하지 않을 때, 또 유사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 법체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념과 제도적 기초가 상이한 체계를 비판하는 것은 엄밀한 분석으로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라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상위개념인 사회주의 체제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이론을 검토한 후 이를 유형화하여,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내재적 방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명한 사회주의 법학자 파슈카니스(Pashukanis)가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형사사법 내지 형사정책은 계급적 이익에 봉

사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는 계급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적대적인 요소가 없는 형사정책 체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¹⁴⁾

그러나 사회주의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제의식을 법의 이념으로서 수용하고 법체화하는 문제와, 근대법의 일정한 형식을 담아내지 못하여 법체계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합목적적이지 않은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짐작컨대, 북한의 법체계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을 잘 담아내면서 나름의 합목적성을 통해 근대법의 형식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지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으나, 만약 최소한의 근대법의 합리성조차 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 자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교 체제 방법을 통해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체제 전환에 따른 형사법체계의 변화와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론적 기초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먼저 비교라는 방법론의 의의와 필요성을 간략하게 다룬 후,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성들을 검토하고(제2절),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를 고찰한 후(제3절), 사회주의 체제 내적 관점을 통해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평가하도록 한다(제4절). 사회주의 법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체제 내적 관점에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작업은,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비판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현재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기획하는 미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13)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형사정책 체계에는 그것을 실현한 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새겨져 있다. 봉건영주는 반항적인 농부들과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도시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동맹을 맺은 도시들은 약탈자들을 교수형에 처하였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을 파괴하였다. 중세에는 길드의 구성원 없이 수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률의 위반자로 간주되었고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지는 단결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시작되자마자 그것을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계급적 이해관계는 모든 형사정책 체계에 역사적 구체성이라는 특징을 부여한다.” Pashukanis(박대원 역), *Allgemeine Rechtslehre und Marxismus: Versuch einer Kritik der juristischen Grundbegriffe*(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 법률적 기초개념에 대한 비판의 시도), 신서원, 2008, 192-193쪽.

14) Pashukanis, 앞의 책, 194쪽. 다만 계급이 완전하게 소멸된 상태에서 형벌제도 일반이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인지는 사회주의 형사법 체제 내에서도 논쟁이 된다.

2. 비교 방법의 의의

가. 비교법적 방법의 개념

세계에는 다양한 법체제(regime) 혹은 법체계(system) 및 개별 법제도가 존재한다.¹⁵⁾ 각각의 것들은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독특한 사회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으며, 독자적 문화지평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법체제 혹은 법체계 및 개별 법제도는 어느 것이 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거나 열등하다는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일 것이다. 다만 어떠한 법체제, 법체계 및 법제도가 보다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널리 계승되고 있는지와 각각의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접목되고 있는지, 또 법체제, 법체계 및 법제도가 지향하는 이념과 제도적 실천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보편성과 특수성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comparative)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법체제 혹은 법체계 및 개별 법 자체에 대한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찰하는데 유용한 비교의 방법은, 통상 비교법(comparative law) 혹은 비교법적 방법(comparative law approach)이라고 하며, 이 방법에서는 개별법에 대한 외국의 예를 비교 및 대조하여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식, 문화, 사회에 대한 외국의 예를 비교 및 대조하여 검토하는 것까지 망라하게 된다.

비교법적 방법은 다양한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질서 전체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법제도와 법규범 및 법문화 등의 비교를 수단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과이다. 이에 대한 정의 몇 가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비교법이란 “모든 현행법체계의 법규범과 법제도를 비교·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거나,¹⁷⁾ “여러 법제도

15) 이하에서는 체제, 체계 내지는 제도라는 개념을 굳이 구별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다. 통상 이 개념들은 운용형태나 양식을 기준으로 체제는 ‘복잡한 현상의 원리에 의한 정렬’을 말하며, ‘체제’는 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조직이나 그 양식 또는 그 상태, 그리고 제도는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라고 사전적으로 설명된다(두산백과사전 참조). 그러나 이하에서 다룰 사회주의 법제도로써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법’이라는 규범을 중심으로 서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형사법’ 내지 ‘형사사법’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므로 개념을 엄밀히 구별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16)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정기, “비교법의 성과로서의 사법의 국제적 통일”, 법학논고 제4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146쪽 이하를 참조!

의 분석·비교를 통하여 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당시의 시대사정에 가장 적합한 해결을 발견하기 위하여 법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학문”,¹⁸⁾ 또는 “여러 법질서를 각각의 정신과 존재양식에서 관련짓는 것 혹은 여러 법질서 속에서 비교가능한 법제도 내지 비교가능한 문제해결을 관련짓는 것”¹⁹⁾ 등과 같은 설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개의 다양한 법체제와 법체계 및 법제도 중에서 특정한 문제의식을 분석하여 찾아내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방법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나. 비교법적 방법의 유형

김도균은 비교법학 방법에 대해서 그 지배적인 흐름을 열거주의와 기능주의 두 가지로 구별하면서 이들 흐름들이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보편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²⁰⁾

그에 따르면 병렬주의는 “여러 법체제들의 병렬적 서술, 중요한 사례들이나 법규들 및 교의들의 발췌, 그리고 역사적 배경 및 유사성과 차이점들에 대한 해설의 첨부를 주로 하는 비교법(교과서) 서술의 방법”이라고 한다. 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통을 취하고 서술하는 방식은 아니라서 다소 교과서적이고 평면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비교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예컨대 통치구조, 기본권, 행정작용, 계약, 불법행위, 형사법, 형벌 등과 같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모든 법제도들의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세계의 법들을 몇 개의 법족(法族, legal families)으로 구분하고, 특정한 비교의 준거점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식들이 통상 비교법이라고 취해지는 방법이다.

17) Pierre Arminjon, Baron Boris Nolde et Martin Wolff, *Traite de droit compare*, Vol. I, Paris 1950, p.10. 박정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8) Adolf Schnitzer, *Vergleichende Rechtslehre*, Vol. I, 2nd ed. Basel. 1961, p.118. 박정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9) ツヴァイゲルト=ゲッツ/大木雅夫訳, *比較法概論·原論上*, 東京大学出版会, 1974, p.8. 박정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0)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잡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34권, 2006, 294쪽. 보다 상세한 비교방법론의 유형에 대해서는 김도균, 앞의 논문 294-298쪽을 참조.

당연하게도 이러한 병렬주의적인 방법론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선정한 비교의 준거점은 자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성을 진지하고 숙고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방법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비교법적 방법론은 이미 확립되어서 명확한 내용을 가진 법규범과 제도들의 단순한 열거와 병렬, 비교와 설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방법론에 숨겨진 철학적 전제들은 확정적 법규주의(legalism), 혹은 스스로 확립한 자문화중심주의, 그리고 서구중심주의적 세계관일 것이다.

한편 병렬주의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기능주의적으로 비교의 방법을 수행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비교법 기능주의(Comparative Legal Functionalism)라고 한다면, 오늘날 비교법분야의 지배적인 방법론은 기능주의의 적인 비교 방법론이라고 김도균은 주장한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 Charles De)의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The Spirit of Law), 메인(Henry James Summer Maine)의 ‘고대법’(Ancient Law), 예링(Rudolf von Jhering) 등의 이익법학도 기능주의적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교법 기능주의는 최근 사회학적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이 흐름에서 법은 사회의 필요나 이익들에 대한 일종의 대응체계라는 것이 전제된다. 즉 사회적 갈등이라는 양식이 어디서나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법이 사회체계의 하부체계로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비교법의 대상이 ‘구체적인 법적 문제들’이라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비록 법체계는 다르지만 모든 인간사회에서 생겨나는 갈등들은 유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능들 역시 유사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흐름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은 모든 법체계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을 통해 각각의 법체계, 법체계 및 개별법들이 평가될 수 있고, 비교가능해진다. 여기서 유사성이란 법의 기능(갈등해결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한 법체계들이 역사적으로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에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유사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유사할 것”이라고 일단 추정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테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모든 비교법의 방법론적 근본원리는 기능(성)의 원리이다”(기능주의 테제 1). 갈등의 해결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각각의 나라 내지 문화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결과들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능상의 유사성이 바로 비교법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능주의의 두 번째 테제가 도출된다. 둘째, “비교불가능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동일한 과제와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만이 법에서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기능주의 테제 2, 기능성원리의 적극적 측면). 여기서 기능(function)은 모든 비교법의 출발점이자 기초로서 유일한 비교준거점이기 때문에 법은 갈등 해결의 형식적 기법들로 축소되고, 여타의 정치적, 도덕적, 문화적 배경들은 소거된다. 이리하여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견되는 해결책들은, 그 개념들의 맥락으로부터 절연되어야 하며 그 민족적 정신과 사상적 색채는 제거되어서 오로지 특수한 법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로서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기능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요청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기능주의의 세 번째 테제가 도출된다. 셋째,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상 및 가치는 비교법연구의 대상이 아니다”(기능주의 테제 3, 기능성의 원리의 소극적 측면) 이러한 점에서 비교법 기능주의는 기능의 관점으로 보편적인 비교법 체계 내지 제도를 구축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비교의 목적

그 방법이 병렬적이든 혹은 기능주의적이든 비교라는 방법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목적적 행위이다. 서로 다른 법체제 혹은 법체계, 및 개별 법 자체를 굳이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고찰하는 것은 먼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이고, 이를 통해서 서로의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보편타당한 것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목적을 전제로 전개된다.²¹⁾

21) 같은 생각으로는 Pierre Lepaulle, *The Function of Comparative Law with a Critique of Social Jurisprudence*, 35, *Harv. L. Rev.* 838, at 855-57(1992); Hiram E. Chodosh, *Comparing Comparisons: In Search of Methodology*, 84 *Iowa L. Rev.* 1025, at 1069(1999); 박찬호,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6, 97-100쪽에서는 비교의 목적을 “입법 작업에 있어서 ‘이해의 증진(understanding), 개혁(reform), 그리고 통일(unification)’”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이해의 증진, 발전, 그리고 하나의 보편타당성 추구라는 비교의 목적은 이하에서 사회주의 체제하의 형사사법제도들의 특성과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제도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 체제하의 통합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지침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일본의 비교법학자인 오오키 마사오(大木 雅夫)가 ‘소비에트법과 부르주아법의 비교가능성’이라는 논의에서 비교법 근거로서의 공통성을 ‘다양성에서의 통일성’ 및 ‘구조적으로 괴리하는 여러 형식의 기능적 등가’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다루었던 것처럼,²²⁾ 북한 형사사법제도라는 특수성 속에서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여러 형식의 기능적 등가를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의 통합된 형사사법제도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제에 따른 거시적 비교

사회주의 법체제는 자본주의 법체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두 체제의 이념과 지향점 그리고 형성되어왔던 역사적 경로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각각이 어떤 이념과 이론 및 역사적 경로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뉜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기획의 산물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된 것에 비해, 자본주의 체제는 역사적 산물로서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단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법체제 대한 몇몇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²³⁾ 학자들에 따라 사회주의 법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법체제로서는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분류하는 경우²⁴⁾도 있다. 통상적으로 소련 및 러시아의 학자들은 사회주의 법체제가 내부적

22) 오오키 마사오 (大木 雅夫), 『ソヴェト法とブルジョア法の比較可能性(単)(소비에트법과 부르주아법의 비교가능성)』, 『比較法研究』29号, 昭和43年3月.

23)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는 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 - 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 37쪽 참조.

24) 예컨대,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특히 “서구의 종교적 측면을 탐구하지 않고 서구법 전통의 혁명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계의 메타포는 어제의 유추이고 오늘의 개념과 같다는

원리와 그 원리들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전제로, 자본주의 법체제의 특징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이원론을 강조하기도 한다.²⁵⁾ 이러한 관점에 따라 법체제의 틀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러한 사적소유를 가능케 하는 장치로서 국가와 법의 이데올로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근대 자본주의 법의 병폐라고 비판받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국가권력을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하에 두는 것이 공법과 사법의 이원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후술하겠지만 사회주의 법체제에서 공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원한다.

자본주의 법체제의 문제인 공법·사법 이원론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주의 법체제에서는 법률적 규제의 주체와 방법에 따라 법영역을 나누게 된다. 즉 법률적 규제에 있어서 주체와 내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되는 법형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법은 비 소유관계, 결혼, 입양, 친족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유관계와 관련된 제반의 것들을 규제한다. 토지법은 토지관리와 경작과 관련된 관계들을 규제하고, 경제법은 사회주의적 기업과 조직 간의 소유관계를 규율하며, 노동법은 공장노동자 및 사무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서 법 영역은 법적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독립적 주체와 그것에 내재하는 방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²⁶⁾ 물론 사회주의 법 분야의 어떠한 규범도 사회, 국가, 개인, 집단의 이익의 조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²⁷⁾

말이 있다. 즉 11세기 법적 은유는 12세기의 법적 메타포이고 13세기의 법적 개념이었다. 법적 유추와 개념의 기틀을 만든 법적 메타포는 주로 종교적 특성이었다. 여기에는 마지막 심판과 지옥에 관한 메타포와 아담의 타락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으며,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 속죄행위를 통한 면죄, 그리고 묶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 즉, 영원한 벌을 가하기도 하고 면죄해주기도 하는 - 성직자의 권력이 있다. 다른 법적 메타포는 주로 봉건적이었다. 비록 그 은유가 종교적인 함축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비유, 명예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비유, 믿음의 맹세에 대한 비유, 병역과 보호의 상보적 유대관계에 대한 비유가 있었다. 이 모든 메타포는 종교의식과 신화의 통일된 구조의 일부였다(여기서 사용된 ‘신화’란 단어는 ‘우화’의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로, 현대에 널리 인식되는 의미인 ‘성스러운 진실’이다). 이러한 탐구가 보여주는 것은 서구법체제의 기본적 제도, 개념, 그리고 가치가 11세기와 12세기의 종교적 의식, 예배식, 그리고 교리에 근원을 두고 있다.” 같은 책, p.165

25) 예컨대, Pashukanis(박대원 역), *Allgemeine Rechtslehre und Marxismus: Versuch einer Kritik der juristischen Grundbegriffe*(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 법률적 기초개념에 대한 비판의 시도), 신서원, 2008.

26) Chriikin 외(송주명 역),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맑스주의 국가와 법이론), 새날, 1990, 305쪽.

27) Chriikin 외, 위의 책, 315쪽.

제2절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이하의 내용은 체제전환에 따른 형사사법제도의 재정비를 고민하는 전제로서 우선 사회주의 체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사회주의 체제의 형사사법제도와, 사회주의 체제 내에 있는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라는 두 대상을 각각 분석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주의 법체제의 하나로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방식은 체제 내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재적 비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연구 방법

사회주의 형사법 체제와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비교 서술하기 전에 그 상위 개념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의 법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화된 이해를 검토한 후에, 보다 특수한 형사사법제도의 일반화된 이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이해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여기서는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유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기본원리가 되는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그 외의 형사사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법이념과 법이론 및 북한의 형사사법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 사회주의 법과 비교를 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주의 형사법체제의 일반화된 특성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중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중국의 형사법체계를 분석하면서 검토하도록 한다.

2. 사회주의 형사법체계의 특성과 일반 이론

가. 사회주의의 법이론²⁸⁾

구 러시아에서는 1917년 10월 볼셰비키(Bolsheviki)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향한 과도기를 거쳤고, 1922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²⁹⁾(이하 소련으로 약칭)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시작을 알렸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초이자 종주국으로서 사회주의 법체계의 전형과 핵심은 소련법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1924년 연방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1936년 소비에트 헌법에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 등 사회주의 체제를 명확히 하는 등, 소련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혁 이전까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혁명의 과정을 거친 소련의 법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나타난 공산정권이 자발적 혹은 강압에 의해 수용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법체제’가 탄생하게 되었고, 여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소련의 정치·경제체제, 그리고 법제를 모방한 일련의 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49년 헝가리 헌법 전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전개된 새로운 역사의 시점에서 소련은 우리 헝가리를 파시즘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비단 헝가리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동유럽의 국가들은 소련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 법체계의 기틀을 점진적으로 다지기에 이른다. 버만(Harold J. Berman)은 이러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확산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한 세기 동안의 혁명운동

28) 사회주의 법이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울 아카데미, 2008 참조. 특히 이 책의 38-46쪽은 사회주의 법의 일반성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다.

29) 구 소련의 정식명칭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이고, 구소련하의 러시아의 정식명칭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이며, 소련붕괴 후 러시아의 정식명칭은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또는 ‘러시아(RUSSIA)’이다. 이하에서는 구 소련을 ‘소련’으로 통칭하여 부르기로 한다.

이후,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 교리는 권위주의적 폭로의 신성과 높은 성직자들의 카리스마와 같은 지도력을 얻었다. 게다가,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친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회의 금욕적인 면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숙청시기에,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라고 서술하기도 한다.³⁰⁾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국가들도 소련 헌법을 모방한 헌법을 제정하거나, 소련의 권력구조를 모방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의 기틀을 확립해 나갔다. 소련의 법체제는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와 레닌의 법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사회주의 법이론의 일반화된 특징을 마르크스와 레닌의 법이론이 소련의 법제를 통해 제도화된 방식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1) 국가와 법의 관계

사회주의 법체제의 이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가와 법의 관계이다. “법은 착취와 억압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와 법은 악이며, 언젠가는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관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용한다. 즉 마르크스의 ‘혁명’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연장하고, 개념적으로 확장하여 법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법의 소멸을 강조한 것과 달리, 레닌은 법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의 법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필연성에 대한 레닌의 법이론은 오늘날의 북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의 법과 제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특히 레닌에게서 법은 국가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래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은폐된 이데올로기이자 폭력적인 도구로서 폄하되던 법은, 현실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지배계급 의지가 반영된 것이자 그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30) Harold J. Berman, 위의 책, 32쪽.

2) 사회주의 법이론의 구조적 특징

국가와 법의 관계 속에서 법의 역할 내지 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 정식화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부구조와 토대로 정식화되는 유물론(唯物論)에서 법은 철저하게 상부구조로서 토대와 관계를 맺는다. 유물론에서 종교를 비롯한 국가, 법은 경제적 토대의 반영에 의해 생성되는 상부구조의 구성 부분일 뿐이고, 이러한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질적 토대이다. 즉 “상부구조에 속하는 법은 자신의 존재 근거에 따라 어떠한 독자성도 지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경제적 구조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토대에 의해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토대가 일방적으로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달리,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상부구조가 생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둘째,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공산사회에 이르게 되면 국가의 억압과 강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또한 소멸하게 된다. 사회주의 법체제의 관점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때문에 발생한 계급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법은 강제와 폭력적 성격을 갖는다. 법은 계급 간의 갈등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 수단이자 압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도래와 함께 법은 고사(枯死)될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주목한 사람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레닌이다. 다만 ‘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위(前衛)이기 때문에 법은 당의 정치적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축소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법은 결국 정치적 기획을 실천하는 당에 종속되고, 당은 법 보다 더 높은 정당성을 갖는 기구로서 법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처럼 당이 영도적 지위를 갖고, 당의 강령이 초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적 지위는 헌법에 의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은 법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 및 국가에서 당의 정책이 사실상 최고 규범으로서 역할하고, 법은 당 정책의 표현 방식이자 실현 수단으로서 하위의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주의 법 체제에서 법치주의 이념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헌법조차도 당장, 당 규약, 당 강령 등으로 표현되는 당헌에 종속되어 지배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헌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은 후술하게 될 북한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당이 영도적 지위를 갖고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의 지위는 권력의 통합을 표방한 민주적인 중앙집중제 원칙을 통해 확고해진다. 즉 당의 절대적 영도권이 확립된 상황에서는 국가 내 모든 권력기구의 일체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력의 분립보다는 권력의 통합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여기서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나 법리로서 ‘민주적 중앙집중제 원칙’이 도출된다. 중앙집중제 원칙에 따라 당과 국가의 기구가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며, 이에 전체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절대복종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예컨대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다 상위의 규범적 역할을 하고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나. 사회주의 형사법체제에서 죄형법정주의 개관

1) 서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소련과 중국의 형사법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들 두 나라는 각각 동구와 아시아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였고, 주변 국가들의 형사사법체제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다소 일반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이들 두 나라의 형사사법체제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을 특징짓도록 한다.

2) 소련형법과 죄형법정주의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과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³¹⁾은 철저하게 부정되어 왔다. 죄형법정주의가 부르주아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착취를 위한 이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고는’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법률에 규정한 형태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고발,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사실상 보장하였고, 인민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폭력적인 자유를 확고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련은 1926년 러시아공화국 제2차 형법전 제16조에 “어떠한 사회적 위험행위가 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근거와 범위 및 사회방위 처분은 그 행위의 성질상 가장 근사한 범죄를 규정한 본 법전의 조항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유추적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폐지하였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정면에서 부정되고, 유추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 제10조에서였다.

그러나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종전의 입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스탈린 시대의 형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대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기야 1958년 형법개정을 통해 유추해석 규정이 폐지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³²⁾

3) 중국형법과 죄형법정주의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79년 형법은 영토, 지역과 경제적 범위의 방대함과 이에 대한 불균형, 형법제정 초기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유추를 광범위하게 허용하였고, 다만 유추를 허가하는 관서를 최고인민법으로 제한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중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게

31)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는 원칙은 어떤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하더라도 국가는 그것이 사전에 법률로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형사제재의 원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는 원칙은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의 종류와 정도 또한 범행 이전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법률주의). 동시에 이 원칙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제정 및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소급입법금지 원칙).

32) 이태언, “러시아 형법의 개관”, 비교법학 제14권, 2003, 5쪽.

된다. 구 형법 하에서 예외적으로나마 허용되던 유추규정을 아예 폐지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문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1997년 개정 형법 제3조에서는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죄를 정하고 형에 처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정하거나 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하여 “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7년의 개정형법은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세부원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도 법률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를 규정하여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였고(동법 제4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부담할 형사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라고 하여 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동법 제12조도 주목할 만하다.

4)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상 죄형법정주의 수용의 양태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들 국가들의 태도가 점차 죄형법정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사회주의 형법 하에서도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강조됨으로써, 형법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배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에서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포기하고 형식적 범죄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추상적이며 모호했던 정치범죄에 대한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 등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유추규정을 통해 가벌성이 무한정으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역사적 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³⁾

죄형법정주의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용되는 역사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자본주의 법체제의 독자적 산물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형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33) 김창도, “통일대비 남북한 형사법 비교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35쪽.

제3절 실재한 사회주의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사례

1. 서설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기 위해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의 일반 이론과 함께,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개관은 두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소련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표본의 편협성이다. 물론 이들 두 나라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의 종주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접근 방법에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관이라는 작업의 성격상 법의 속성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 점이다. 물론 개관에서 일반적인 법의 속성과 이념을 검토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을 분명히 하는 데는 실재한 개별 사회주의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동구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의 성립부터 법 특히 형사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1996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한다.³⁴⁾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화된 특징들과 쟁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련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위에서도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1917년 10월 혁명 직후인 1918년 7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인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1924년 1월 연방국가를 헌법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소비에트연방 헌법이 제정되었다. 형법의 경우, 1917년 혁명 이후에도 소련에서는 1903년의 러시아제국 형법이 그대로 통용되었지만, 1917년 혁명을 기화로 급격한 체제 형법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된다.

34) 법무부,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1996.

먼저 최초의 체계적인 형법전은 1919년 12월 12일 러시아 공화국사법인민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러시아 공화국 형법의 지도원리’이다. 1922년에는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이 제정되었지만, 1924년 ‘형사입법의 기본원칙’³⁵⁾이 제정됨에 따라 러시아 공화국은 1926년 11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형법은 1930년대 스탈린식의 무법정책, 대중탄압의 도구가 되었다가, 스탈린 사후의 개혁조치에 따라 1958년 12월 소연방최고회의에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이 새로 채택되면서, 각 연방 공화국은 개별 형법전을 채택하게 된다. 러시아 공화국은 1960년 10월 신 형법전을 채택하여 1961년 3월부터 시행하였으며,³⁶⁾ 이후 위 1960년 러시아 형법전은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형법으로서의 기본 체계는 페레스트로이카 시대까지 유지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형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주의 법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1960년대의 러시아 공화국 형법 또한 형법의 임무에 대하여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형법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체제, 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사회주의적 소유, 그 국민,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전체사회주의 법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동법 제1조). 전형적인 사회주의 형사법적인 특색을 갖는 러시아 공화국 형법의 내용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 성격을 띤 반소비에트적인 선동과 선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동법 제70조)이 존재하고, 이 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또한 투기행위와 기생적 생활에 대한 처벌 규정과 같이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 또한 넓다. 또한 국유재산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며, 국유재산의 횡령이나 수뢰에 대하여도 사형(死刑)이 규정되어 있는 등 중벌주의의 경향이 농후하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규문주의적 전통이 강한 것이 특색이다. 1957년 2월 전연방의 법전을 폐기한 헌법개정에 따라 1958년 12월 ‘형사소송법 기본원칙’이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1960년 10월 제정된 ‘러시아 공화국 형사소송법전’이 여러 차례

35)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공화국 형사입법의 기본원칙」(The Principles of Criminal Legislation of the USSR and the Republics).

36) 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 - 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 395-400쪽.

개정과 보완³⁷⁾을 거치면서 유지되어 왔다.³⁸⁾ 특히 1960년대 제정된 러시아 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신규문주의적 형사소송법으로 평가되며,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인민대표의 참여와 독립성을 상실한 법관의 기능을 통해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소련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판은 페레스트로이카와 러시아연방의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3. 폴란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1936년 사회주의 소련연방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1952년 7월 폴란드인민공화국 헌법 또한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력 분립의 원칙 대신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에 근거한 권력통합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1976년 2월 개헌을 통해 폴란드가 소비에트연방의 역사적 과업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폴란드통일노동자당(PVAP)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사회단체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산당의 존재와 위상 및 역할은 확고한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회주의 체제적 성격을 가진 형사사법들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형법 제34장 ‘공공질서 침해범죄’에 해당되는 다수의 정치범죄와 예컨대 투기 또는 부정경제행위와 같은 경제범죄는 중하게 처벌되었다. 사회주의 형법의 특성상 경제형법에서 일정한 특색을 보이는데, 먼저 사회주의이념에 근거하였던 ‘투기단속법’은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를 처벌하는 경제형법이었다. 그 외 형법상 ‘정치적·경제적 기본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중에서 특히 중한 경제범죄, 외환범죄, 관세범죄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사적 경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경제형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형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각종 행위유형의 규제 이외에 계획경제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가장행위와 계획달성조작행위 등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사회주

37) 1961년 10월 27일 제정된 러시아 형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1996년 현재까지 총 434회에 걸쳐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8) 그 이전에는 1922년 5월 25일 제1차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19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1923년 2월 15일 새로운 형사소송법전으로 대체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존속해 왔었다.

의 체제 하의 폴란드에서는 경제범죄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제정된 ‘형법(1969년 4월 19일)’, ‘금융형법(1971년 10월 26일)’, ‘경범죄처벌법(1971년 5월 20일)’, ‘상법(1934년 6월 27일)’ 및 새로운 일련의 부수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 및 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규정도 다분하였다. 먼저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82조의a는 체제수호적 성격의 형사법이었고, 누범자 재사회화시설 수용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였다. 사회적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여, 이를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 자유박탈형이 15년 이상 25년 이하로 중하게 처벌되는 등 사회적 재산에 부여되었던 형법상 보호가 중하게 규정되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형법 각칙에서도 두드러져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각론 체계상 우위에서 규정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전근대적인 형사소송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1980년대에 폴란드에서도 소송제도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개정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1980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개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위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981년 12월 전쟁법의 공포로 인해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중단되면서, ‘전쟁법 및 그로 인한 예외적 상황에 관한 법률’과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적용되던 ‘한시법’이 형사소송법에도 적용되게 되어 억압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많은 형사절차가 충분한 증거도 없이 법원칙에 위반되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5년 한시법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제기되었고 1987년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부당한 형사소추로부터 보호받을 법치국가원칙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범죄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합리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5월 및 1990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변화가 있게 되었다. 검찰의 미결구금 명령권이 제한되었고, 피체포자의 법원에 대한 항고권이 부여되었으며, 검찰의 간이 수사절차에 관한 감독권이 확정되어 그 결정에 관한 관할집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 예이다.

4. 헝가리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헝가리는, 폴란드와는 달리, 정치개혁보다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에 집중하면서 시기적으로 늘 우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³⁹⁾ 헝가리는 이미 1968년에 신경제기구의 형태로 경제개혁을 시도하여 동유럽 국가 중 중앙계획 경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한 최초의 국가였지만,⁴⁰⁾ 1980년 이후 국유기업의 해체를 통해 독점산업을 분산시키고 사경제적 소규모 기업을 장려하는 등의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에서 여타의 동유럽 국가와는 다른 체제의 양상을 갖는다.

헝가리 형법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규정들이 폐지 및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역시 경제형법의 특수성과 정치형법으로서의 특성이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형법의 내용과 그 적용이 국가의 경제정책 및 경제행정 규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1978년 폴란드 형법의 제17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국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조문들은 모두 4개의 절로 구성되었는데, 제1절은 경제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감독활동, 국가의 대외 무역독점 등을 보장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2절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재산취득을 저지하고 개인이익에 우선하는 사회전체 이익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보호에 기여하는 범죄유형인 투기, 가격인상, 공적 공급의 위협 등을 처벌하는 구성요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3절은 ‘화폐 및 인장의 위조’를, 제4절은 ‘금융범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중 제4절에서는 외환범죄 및 관세범죄 등이 경제범죄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형사법으로서 헝가리 형법의 경우에도 정치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정치형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컨대 형법 제 139조의a ‘공모죄’의 구성요건 중 “사회질서 약화를 초래할 목적”과 같은 불명확한 구성요건이 남용되면서 정치범을 처

39) 허만 외, 동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집문당, 1993, 88쪽.

40) 허만 외, 앞의 책, 88쪽.

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원칙에 근거하였던 형사처벌 규정이 많았으며, 사회주의 형법의 특징답게 상대적으로 개인적 범익의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보안감호제도,⁴¹⁾ 경찰구금, 알콜중독자에 대한 강제입원치료 제도 등은 정치적으로 많은 남용을 가져왔고, 연좌제와 사형제도도 규정되어 있었다. 자유형의 최저기간은 3개월이었고 최고기간은 15년이였다.

5. 루마니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루마니아는 1936년에 이르러 통일된 형법을 제정하였고, 이 형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고전주의, 실증주의적 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 소련에 의하여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국가안보,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회주의적 법질서 확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개정을 겪게 되었다. 개정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형법이 모델이었음은 당연하다. 형법은 공산주의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남용되었고, 범죄의 예방과 억제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전락하였다.

수차례 개정된 형법은 1969년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이념에 보다 충실한 형법으로 개정된다. 비록 범죄론과 형벌론 체계 등을 통해서 프랑스 법계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형법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의 특성은 특별구성요건들과 법정형 및 해석과 적용과정 등에서 잘 드러난다. 1969년 형법에서도 대부분의 반국가 범죄는 사형으로 처벌되었고 사회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통상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규정된 형량의 2배에 상당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가중적 형태’의 사회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액에 따라 장기의 징역형과 더불어 피고인의 재산몰수가 수반되었다. 그 뿐 아니라 중앙 계획경제체제를 위협하는 행위 예컨대 농장생산물이나 가축을 공개시장에 판매하는 행위 등에

41) 원래 누범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나, 사실상 자유형의 연장과 다를 바 없어서 피감호인의 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고립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한다. 보안구금제도는 1974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자유박탈형 중 하나이다. 보안구금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이다. 보안구금은 중한 범죄자를 개선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범죄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한 자유형의 연장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보안구금제도의 교육처분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었다. 대개 피보안구금자는 교도소내에서 피구금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었다.

대하여 중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루마니아 형법은 체제 수호라는 이념 하에 유추해석과 불명확하며 추상적인 구성요건 개념을 사용하였고, 형벌의 위하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반국가범죄의 개념,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의 범죄화, 소유권이 개인인지 사회인지에 따라 그 침해의 처벌을 차별하는 등 동유럽 사회주의 형법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의 부가형으로 규정된 재산물수형도 사회주의 형법의 특징적인데, 특히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재산까지 몰수하여 범죄자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통일을 계기로 1936년에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이 채택되어 1937년에 시행되었다. 이 형사소송법은 특히 1947년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수차례 개정되어 소련식 제도가 도입되어 전근대적 형사소송관을 보여주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사법부와 법무부로부터 분리되고 국가안보·국가기관·국가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그러하다. 1936년의 형사소송법은 1969년까지 시행되다가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정권 초기에 입안된 1968년 형사소송법으로 대체되었다.

혁명 직후 정보·수사기관의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동법 제206조가 폐지된 것을 비롯하여(1990년 포고령 제12호)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체제하 개별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들은 몇 가지 공통적 성격을 지닌다. 이를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포괄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에 적극적인 유추해석과 포괄규정 등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는 부정되었다. 예컨대 폴란드에서는 ‘국가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종교적 자유의 남용행위' 등을 처벌하던 형법규정이 있었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되어 온 위법한 복종행위의 선동(형법 제282조의a)과 같은 불명확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기생생활에 대한 법률'을 통해 악의로 고용을 회피하는 행위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한편 형가리는 정치적 범죄구성요건에서 공모죄 구성요건상의 '사회질서의 약화'와 같은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체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법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한다.

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적 성격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공화국 탈주죄와 같은 정치범죄에 대해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전복(제98조), 사회주의체제 국가에 대한 침해(제99조), 선동죄(제100조), 사회주의체제 국가 및 그 대표자에 대한 비방죄(제104조)와 같은 규정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형사법의 존속하였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던 '공화국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과 '시민의 기생 및 강제노동의무에 관한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였다. 루마니아 형법에서는 태업죄(제164조), 국가·공동단체에 대한 모독죄(제237조), 사회주의 국가에 반대한 선동죄(제166조 제2항), 불법월경죄(제245조), 공익에 관련된 비밀 누설죄(제251조), 귀국명령거부죄(제253조) 등이 사회주의적 형법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에서 언급한 소련과 중국의 법체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죄형법정주의의 형해화와 함께 가벌성의 무한한 확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이라는 사회주의 형사법의 특성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권력 체제 또한 강화된다. 당의 강령과 같은 지도원리가 법 보다 상위의 규범으로 위계를 형성하면서,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 이념은 사회주의 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다. 사적 경제행위 및 사회적 재산침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

사회주의 체제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억제하고 계급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기획을 함께 따라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폴란드 형법에서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원칙에 대한 침해(제217조), 하자의 야기 및 은폐(제218조, 제219조), 기술설비의 장애에 의한 경제적 혼란의 야기(제220조), 개인상품 또는 개인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국영기업 피고용자의 영업참가행위(제233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 외 경제범죄에 속하였던 경제거래에 있어서의 사기죄에 대한 규정(1969년 형법 제285조)을 재산죄의 장에 규정된 사기죄(형법초안 제285조)에 일원화시키고 있었다. 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에서도 경제법규의 핵심을 회피하는 행위(제116조), 투기행위(제117조), 사기업 경영에 있어서 과업 불이행(제119조), 사회주의적 기업활동의 남용(제138조), 경제질서에 대한 기타 범죄(제126조, 제128조 내지 제131조) 등을 규정하는 등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와 사회적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 개인적 법익 및 인권에 대한 경시

이처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에서 개인적 법익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개인적 법익에 비해 먼저 규정되어 있거나, 후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전자의 법익침해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기술 등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체제의 형법전에서는 통상 국가적·사회적 법익 혹은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에 비해 앞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매우 높다. 이러한 경향은 절차 규정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사회주의 체제 하의 형사소송규정이 규문주의의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점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형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형자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폴란드에서는 독방수형과 같은 징계형이 있었고, 헝가리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고문이나 의학실험 등을 자행하였다.

제4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평가

1. 북한의 일반화된 법이론 개관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성문법은 헌법,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가 있고 불문법에 속하는 관습법, 판례법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법원리이기도 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당은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영도적 우위에 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법률은 -다른 사회주의 법체제와 마찬가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관철 하는 수단이며, 정치의 종속적인 속성을 보인다.

북한법은 1972년 헌법 채택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을 지도하게 되면서 김일성 교시가 최상위의 규범이 되었고, 이어 그 하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하위에 북한 헌법이 자리 잡게 되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즉 일반법은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규약, 북한헌법의 하위 규범으로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북한 헌법 전문(前文)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라고 밝혀놓음으로서 헌법적 근거까지 갖게 되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은 초헌법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전에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추규정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등 근대 형법의 기본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2007년에 ‘형법부칙’을 제정하여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폭 확대하였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2009년 형법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형법의 각론분야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한 반면 전반적으로 형기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⁴²⁾

이와 같은 북한 형법의 최근의 개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

42) 자세한 것은 이 연구의 제4장 ‘북한형사사법의 실태와 동향-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참조.

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짐작컨대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을 형사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변화의 폭과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현재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도로만 형사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형사법 및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자본주의적 시대변화, 그리고 체제 수호라는 목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통치권자의 자의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판단이 타당하다면 북한 형사사법제도는 점진적으로 근대적인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법치주의를 온전히 수용하기 보다는 수령과 같은 지도자의 교시 내지 말씀을 통한 영도를 통해 자의적 통치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잠정적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관계

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부로서 북한법

북한법의 법체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에서와 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법체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법체제법의 원형인 소련의 법과 “당의 지도,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친권자적인 법의 성격 그리고 이론적 기초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우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과 유사성을 갖는다.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 법체제의 특성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회주의 법체제와 북한의 법은 모두 법을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특히 부르주아가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폭력으로 본다. 동시에 법은 특수한 사회 규범이면서,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공동규범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법은 상부구조로서 (물적) 토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관계, 특수한 역사적 구성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기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둘째, 법의 규범성 보다는 민주적으로 중앙집권화된 당의 지침이 보다 상위의

규범력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은 민주적으로 집합되어야 하는 것이 이념이며, 이는 당과 같은 중앙집권화된 위계조직을 통해 현실화된다. 북한의 경우도 당규는 헌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과 국가기관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셋째,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본질적이라는 점이다. 즉 형사법의 경우에도 개인적 법익보다는 국가적 내지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더 강조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특성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적·사회적 재산의 보호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넷째, 형벌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중국과 북한, 소련 모두 형벌로서 노동형을 규정하고 있다. 소련의 자유박탈 없는 노동교화형과 중국의 구역, 북한의 로동단련형 모두 노동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독재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공통점도 있다. 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세 국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교양처분을 내린다는 점이다. 소련에서는 교육처분이, 중국도 국가가 미성년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⁴³⁾ 북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 북한의 형사법에서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공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고 사회, 국가, 집단, 개인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형사법체제가 사회주의 법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법의 합리성 검토

사회주의 법체제의 성격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부로서 북한 형사법이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체

43) 대한민국 법무부 번역, “중국형사법”, 2008년, 제17조.

계를 형성하고 있고, 적어도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법과 제도에서 잘 구현해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력이 프롤레타리아에게 집중되어 있고, 집중된 권력을 갖는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독점하는 이론적으로나마 다소 극단적인 민주주의 방식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법치국가 이념이 그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여기에 법전문가들의 담론이 법이 민주주의와 괴리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논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북한법체계에서 - 비록 과잉된 형태이긴 하지만 -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법의 우위에 프롤레타리아의 정치권력(즉 독재)를 앞세우고 있는 점 또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주의 법체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지평을 갖는다. 예컨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지배층에 의해서 부와 권력이 독점된다면 오히려 전체주의를 강화하고 개인에 대한 폭력이 빈번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자의적인 지배와 폭력이 일상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오늘날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쉽게 확인된다. 권력의 민주화가 아닌, 세습화를 통해 일인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법치가 아닌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법집행이 빈번하다는 점이 그러하다.

다.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차이

한편 북한의 법과 그 운용은 상당부분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성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대 소련법에서는 전통적인 대륙법을 계수한 제정 러시아 시기의 법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에는 서구적의 윤리적, 종교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⁴⁴⁾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 법률상의 공준은 자유민주주의와 많은 부분 달랐지만 기독교의 공통된 뿌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설립에서 소련의 도덕률’(Soviet Moral Code of the Builder of Communism)은 소련 학교의 학생들

44)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이 마음으로 깨달아야하고 소련 법적 정책의 근간으로써 받아들여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사회의 선을 위한 양심적 노동-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도 안 된다.’ ‘공공의 부를 쌓고 유지하지 위한 모두의 관심’, ‘전체주의와 동료의 상호적 보조-하나는 모두를 위해 있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 있다.’ ‘정직과 신뢰, 도덕적 순결성과, 겸손,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삶의 순수함’, ‘부정의, 의존적 삶, 부정직, 출세제일주의, 물질만능적 삶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태도’, ‘공산주의의 적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태도’, ‘모든 국가의 노동자와 모든 사람들과 형제애적 결속.’⁴⁵⁾

북한의 법체계에서 종교적인 특성 내지 기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의 영향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법의 정서적 기초가 한국적인 전통과 윤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통한 그들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속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법의 정서에서 나타나는 유교적인 전근대성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가부장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종의 가족의 유비를 통해 내부적 결속과 위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는 특성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질서는 이른바 ‘수령론’에서 정점을 찍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의 본질에 있어서도 북한은 사회주의 법체제와 달리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법의 정치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자주성을 기준으로 하여 혁명적 법사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법은 상부구조에 불과하여 정치의 기본 실현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극대화되어 표출되는 것이 ‘수령론(首領論)’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고, ‘수령론’과 주체사상이야말로 북한 형사법 내지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수령을 인민대중의 최고 영도자이자, 최고 지도자로 찬양하면서 일종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수령의 위치를 정립한다.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 불

45) The Moral Code of the Builder of Communism은 소련에서 1961년에 제22차 Party Congress에서 채택한 공산당프로그램(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의 일부분이다. 이는 Dan N. Jacobs의 The New Communist Manifesto and Related Documents, 제3판 (New York, 1965) 35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Harold J. Berman, 위의 책, 32-33쪽에서 재인용.

46) 같은 견해로는 정광진, “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18쪽 이하 참조.

수 있는 당과 국가의 관계에 수령이라는 존재자를 추가해 당과 국가 위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과 입법 및 해석 등 사회전반에 있어 단연 최고의 위치에 수령, 즉 김일성과 김정일 및 김정음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북한법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인할 때 주체사상의 도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밝혔듯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내세우면 자신들이 법체계에 사회주의 법이론을 수용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중소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북한은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모색하면서 공공연하게 독자성 내지 자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물론 주체를 주창하고 강조하면서 외국(외세)의 영향과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주체사상은 후진국인 약소국가에게는 생존의 방식이자 저항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본임무에 부합하게 각 분야별 법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체의 법이론 정립이 시대적으로 요청이 된 것이다.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사상혁명을 심화시키는 법칙, 그리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심화시키는 법칙 등을 제정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체의 법이론이 집약된 것이 1972년 북한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제4조)함으로써 1972년 헌법은 주체사상을 헌법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목적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강령에 부합하도록 당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주체사상은 수령론과 결합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예컨대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김일성에게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3.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 평가

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

1) 북한 형사법의 목적과 구성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형법의 본질을 “우리나라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우리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산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을 진압하고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화국 형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노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회주의형법이다. 공화국 형법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반대하며,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에 독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의 구성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북한 형사법의 성격

이러한 북한 형사법의 성격은 이미 분석하였듯이 정치 형법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 형법 제1조에서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잘 보여준다. 둘째, 실질적인 범죄개념을 통해 가벌성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7조에서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그러하다. 마

지막으로 형법 각칙에서 국가적·사회적 법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다.⁴⁷⁾ 그리고 연좌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개인책임을 세분화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평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다루는 과정 속의 중요한 기준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원리이기에, 이를 평가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앞서서 소련과 중국의 형사법체계의 입장을 분석해 봤을 때, 소련과 중국 모두 유추의 원칙을 초반에 인정한 것과 달리 이를 금지시키거나 배제시켰고,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화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북한의 형법과 이론이 정치의 도구화라는 관점에서, 초기 북한의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는 봉건을 반대하여 투쟁한 부르주아계급에 의해 주창된 것이다. 그 기원 자체가 이미 계급적 이해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둘째, 부르주아 형법학자들은 죄형법정주의를 마치 지배계급의 자의와 폭력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법관을 말하는 입으로만 전락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헌장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즉 허울 좋은 선전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죄형법정주의에 보장되는 것은 부르주아계급의 무제한적인 착취의 자유일 뿐이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넷째, 죄형법정주의의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1972년 헌법 채택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의 지도 이념이 된 후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 규약 그리고 북한헌법의

47) 같은 견해로는 강석호, “북한형법체계와 죄형법정주의”,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22쪽 참조.

하위규범으로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독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형사법에서 법치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 제9조에서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74년 형법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명문으로 유추해석을 허용하였고, 소급효금지 규정에 소홀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더 나아가 1987년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의 제한을 새롭게 규정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현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동 형법 제10조). 다만 1987년 형법 제8조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와 신법우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소급효 금지 원칙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⁴⁸⁾

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던 입장은 2004년 6차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⁴⁹⁾ 즉 죄형법정주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동 형법 제6조). 일단 유추해석을 규정하였던 1999년 형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신설하였다. 다만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제활동 부문 등 새로운 범죄유형을 대폭 증가하여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48)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통일연구원, 2005, 16쪽 이하 참조.

49)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된 법률들을 모아 법률출판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2004년부터 간행·보급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적인 처벌로써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견해는 부한 형사법체계가 처한 입장을 잘 표현한 탁월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⁵⁰⁾ 더불어 과도한 경제 및 상행위로 인한 사회적 일탈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규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것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기준에 의한 사회주의체제 내의 평가

이미 다루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련에서는 자본가계급의 지위보장과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강화해주는 자본제적 생산 자체의 조건을 법률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1926년 러시아공화국 제2차 형법전 제16조에서 유추규정을 허용하고 명문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바 있다. 그러나 1958년 유추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다가 급기야 1960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에 명문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게 되었다. 중국 또한 영토의 광대함, 형법제정 초기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1979년 형법에서 유추적용을 허용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였지만,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법률주의와 유추 해석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소련과 중국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수용되는 연혁을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 또한 죄형법정주의를 전면반대에서 개정헌법에 선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수용은 북한만의 특수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북한헌법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교시와 노동당 지시를 초헌적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실질적으로

50) 윤대규,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북한법연구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5 참조.

가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따라, 집단에 의한 형법체제가 아니라 한사람의 지도자체제의 이론에 근거한 법률을 내세우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범죄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유추해석금지가 형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개정을 통해 유추해석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했으나, 법조문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4. 소결 - 북한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지금까지 사회주의 법이론으로 시작되는 사회주의 형사사법체제와 그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소련 형법을 알아보고, 이들의 형사사법제도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의 법체제 가운데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집중하여 그 특징들을 열거하고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분명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체제와 유사성을 갖는다 즉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과 같은 고유성과 독자성이 또한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위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형사사법체제가 사회주의 법이론과 민주적 권력집중제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적어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주체사상 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형사사법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에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은 언제든지 법을 영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나 북한이라는 국가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범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체제를 흔드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는 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제도는 사회주의 형사사법체제의 관점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당연히 주체사상과 수령론이 그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고유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사회주의 법체제가 추구하는 민주적 중앙집권의 원칙이라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왜곡되거나 형해화시킬 수 있다. 급기야는 일인(一人)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정당화하게 되고, 우리가 이미 목도하는 바와 같은 권력의 세습과 자의적인 사법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지 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

박학모·이규창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

앞 장(章)에서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방법론적 이해를 시도하였다면, 여기에서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일반적·전반적으로 개관하기보다는 그 특징적 변화·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⁵¹⁾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북한형사사법의 규범적 기능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상 법에 버금가는 실질적 구속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심지어 법을 능가하는 초법률적 규범의 형사사법상 기능 및 그 변화에 대하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법원을 개관한 후에는 먼저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으로 나누어 그 법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형사사법제도 및 절차상 주목할 만한 특징과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1절 북한형사사법과 헌법 및 초헌법적 규범의 의의

1. 헌법과 북한형사사법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구체적으로 응용된 헌법”⁵²⁾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

51)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원(法源)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김도균, 앞의 글, 466쪽 이하를 참조! (이 글의 각주에서 “참조!”와 같이 “느낌표(!)”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문헌(또는 해당쪽)을 참조하라”는 지시의 의미를 줄인 것이다.)

52) 배종대 외, 신형사소송법, [1] 갯번호 6.

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의 이념에 상응하여야 하며, 그 해석·적용 또한 헌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절차법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헌법규범은 형사재판의 준거규범이 된다.⁵³⁾ 이는 사회주의법체계가긴 하지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북한의 법체계에도 해당될 것으로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헌법⁵⁴⁾은 제5장에서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9조에 국민의 ‘인신불가침’을 규정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구속 및 체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⁵⁵⁾ 2009년 헌법 수정보충, 즉 개정을 통해서도 제1장 ‘정치’의 장에서 제8조 제2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제6장 ‘국가기구’에 관한 장에서는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에 형사사법기관의 기본적인 구성·조직 및 감독⁵⁶⁾과 함께 그 임무⁵⁷⁾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157조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원칙’에 상응하는 검찰조직상 ‘지시복종의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대신 “재판소(법원)”의 독립과 법에 의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164조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피소자(피고인)의 변호권 보장 또한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형사사

53) 이와 관련된 이른바 “헌법적 형사소송법론”에 대해서는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5쪽 이하; 배종대 외, 앞의 책, [1] 갯번호 8.

54) 가장 최근의 2012년4월13일 북한헌법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이 북한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 헌법이 곧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글에서 “북한헌법”, “북한형법”, “북한형사소송법”을 조문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이는 2012년 북한의 법률출판사가 간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각각 가리킨다.

55) 한편 북한헌법 제18조 제2문은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82조에서 다시 “국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 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적준법의무를 헌법적으로 의무 지워 강조하고 있다.

56) 제157조와 제167조는 각각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의 검찰사업 및 재판사업에 대한 총체적 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57) 제156조는 검찰소의 임무를, 제162조는 재판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여기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과 기본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을 사상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2009년 개정헌법 제3조는 그 중에서도 북한헌법의 핵심원리로 천명되어온 ‘주체사상’⁵⁸⁾에 추가적으로 ‘선군사상’⁵⁹⁾을 헌법의 지도적 지침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으로 헌법에 천명되기 이전에 이미 북한에서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⁶⁰⁾으로 제시된 선군사상은 선군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강력한 혁명역량을 꾸리는 혁명사상으로 칭송되었다.⁶¹⁾ 이러한 선군사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6장 제2절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여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과 임무⁶²⁾ 등을 추가하고 있다.⁶³⁾

나아가 2009년 개정 북한헌법 제59조⁶⁴⁾는 1998년 헌법에는 없었던 ‘선군혁명노

- 58)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정용기,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10, 226쪽 이하 참조 1972년 당시 북한 신헌법에 의한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1975, 86쪽 이하 참조
- 59) ‘선군정치이론’의 연원 및 국제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2013, 108쪽 이하를 참조 이에 따르면 과거 “국제사회주의 탈식민정치에서 북한을 국가형성기부터 독창적으로 독립적이었던 국가 행위자로 보이려 한 것”이 주체사상이라면, 오늘날 선군사상은 북한의 시각에서 세계적 사회주의혁명이상의 수호에 실패한 소련은 물론 시장·경제 중심 사회주의의 길로 나간 중국과도 차별화하여 유일하게 남은 (군사중심) “사회주의의 보루”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같은 책, 116쪽 이하). 정치적 지평의 선군“사상”과 보다 근본적인 철학적 지평의 총대“철학”이 짝을 이루는 점과 그 차이 등에 대해서는 같은 책, 126쪽 이하를 참조
- 60) 박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3권 제1호, 2007, 57쪽 이하.
- 61) 안광수,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2호, 17쪽.
-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9조.
- 63)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여 헌법적으로 선군정치의 기본틀을 마련한 북한이 이처럼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관한 장을 신설한 것은 선군정치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363쪽 이하 참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북한학자의 글로는 리명일, “새롭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선군정치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6권 제2호, 2010, 113쪽: “주체98(2009)년4월9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념원을 반영하여 (...)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였다. (...)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혁명적무장력의 사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임무, 권한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더욱 확고히 담보한다.”
-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선의 관철과 혁명수뇌부 보위'에 관한 조항을 추가·신설하여, 선군혁명노선의 관철을 위해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 국방위원회(북한헌법 제109조 제1호)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헌법적으로 엄호하고 있다.⁶⁵⁾

2. 초헌법적 규범과 북한형사사법

북한헌법 전문(前文)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⁶⁶⁾는 선언으로 맺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⁶⁷⁾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말씀을 글의 서두에 두꺼운 고딕체로 인용하며 논지를 서술하는 북한학술논문의 인용 전통은 북한법학 고유의 ‘전거주의’(典據主義)⁶⁸⁾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컨대 범죄자의 ‘범죄적 주관’에 대한 논문을 김일성전집에 수록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라고 한 아주 평범한 내용의 김일성 교시를 내세워 논지를 펼쳐나간다는⁶⁹⁾ ‘법적 책임’에 대한 논문을 “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나 법적으로 책임추궁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한 김정일 발언(김정일

65) 북한이 2009년4월 헌법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이러한 헌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같은 해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사실 및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군 관련 직책을 부여한 점 등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0-34, 4쪽 이하 참조.

66) 이처럼 헌법적으로 천명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시대의 공식이데올로기로서 “선군사상을 김정일주의로 격상시켜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 올림으로써 선대 수령의 사상을 고도로 추상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위기시기의 선군사상” 모두를 서랍 위에 놓고 탈선군적인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 구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정치, 윤병관(편저), 북한의 오늘, 2014, 57쪽 이하 참조. 이와 달리 선군사상이 개정 헌법 및 노동당규약에 명시됨으로써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지도적 지침으로 심화·발전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352쪽;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2011, 27쪽.

67) 윤대규, “북한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2003, 29쪽 이하.

68)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37쪽.

69) 신충룡, “범죄적주관에 대한 과학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1호, 2009, 38쪽.

선집)을 토대로 시작하는 식이다.⁷⁰⁾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이 2009년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1장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법의 준수, 집행과 관련하여 하신 교시와 말씀”이란 제하에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마치 법조문처럼 열거하고 있다.⁷¹⁾

이처럼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권위 있는 발언의 인용이라는 일반적 관행을 넘어 그 교시나 말씀 자체의 규범적 권위와 존엄성 인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 선언하고 있는 북한헌법 전문에 이미 김일성·김정일의 초헌법적 존엄과 권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헌법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적으로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⁷²⁾ 따라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⁷³⁾ 등은 “초헌법적 법원”⁷⁴⁾ 또는 초법률적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⁷⁵⁾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형법개

70) 리경철, “법적책임추구의 일반조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60권 제1호, 2014, 112쪽.

71) 리윤기 외,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12쪽 이하 참조.

72) 노동당규약 전문(前文)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선언하며,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거의 상호일치하는 지도적 지침을 담아 노동당과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등치시키고 있다. 또한 노동당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 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라고 선언하여 노동당이 초헌법적 기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최고 상위 규범이 되고, 그 아래에 노동당규약과 헌법이 위치하게 되는 형태”(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사법개요: 특징과 실태, 2011, 38쪽)라고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3) 1980년 10월 13일 이후 30년만인 2010년 9월 28일 개정된 노동당규약이 2009년 개정헌법과 마찬가지로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이념을 중심으로 개편된 점에 대한 개관으로는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2011, 24쪽 이하 참조.

74)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41쪽.

75)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15쪽 이하.

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형법의 형사정책은 조선노동당의 형사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⁷⁶⁾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닌 셈이다.

제2절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형법의 변화·발전

1. 북한형법의 발전과 변화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채택에 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하여서이며, 1990년 이전에도 이미 1974년과 1987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법개정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⁷⁷⁾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북한형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북한형법의 형사실체법적 발전 동향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76) 김일수, “북한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201쪽 이하.

77) 1950년 북한형법 제정 및 1972년·1987년 북한형법 개정에 대해서는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259쪽 이하 및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57쪽 이하;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2000, 331쪽 이하(제10장 “북한 형법 반세기”)를 참조! 2004년 형법개정에 대해서는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2011, 17쪽 이하, 윤대규, “2004년 북한 개정형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365쪽 이하 및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13쪽 이하를 참조!

가. 1950년 북한형법의 제정

1950년 3월 3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하여서 제정되어 1950년 4월 1일부터 북한 전역에 시행된 북한의 제정형법은 북한의 형사법제사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대표적 형사입법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혁명 과도기정권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도구로서 형법을 강화할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형법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⁷⁸⁾

해방 이후 미군정 아래 있던 남한이 행정적·법적 진공 상태를 우려한 나머지 기존 식민지법제의 골격을 유지시킨 채 일제군국주의와 직결된 악법들만 폐지하는데 그쳐 법적으로 식민과거를 청산하는데 미온적이었던 반면, 북한은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분쇄와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일제식민지 악법의 효력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전면적 식민과거청산작업⁷⁹⁾을 단행함으로써 식민지법을 토대로 한 구법질서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황이 초래된 것 또한 형사법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형사법 제정 및 체계화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선진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법제도를 계수⁸⁰⁾함으로 주민에게 선진법제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려 했다는 형사법제정의 정치적 동기도 존재하였다.⁸¹⁾ 이 점은 북한형법학자 심현상이 형법제정의 의의에 대한 서술하며, 1950년 북한형법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형법전으로서 공화국의 징벌정책에 있어서 통일성을 더욱 보장하고 성과적인 범죄와의 투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⁸²⁾

1926년 소련형법을 모방한 1950년 북한형법의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회

78) 김일수, “북한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91쪽.

79)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한인섭, 앞의 책, 335쪽 이하 참조

80) 소련형법의 영향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259쪽 이하 및 한인섭, 앞의 책, 344쪽 이하 참조. 강구진 교수(북한법의 연구, 1975, 169쪽)에 따르면 1950년 북한형법은 당시 소련에서 시행중이던 1926년 「러시아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며, 북한형법학자(심현상)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81) 강구진, 앞의 책, 170쪽.

82) 심현상, 조선형법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15쪽(강구진, 앞의 책, 171쪽 이하에서 재인용).

주의형법학의 범죄론의 전통에 따라 제7조⁸³⁾에 범죄를 ‘사회적 위험성’⁸⁴⁾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실질적 범죄개념’을 형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조에서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사회주의국가 및 그 법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형법의 과업, 즉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1950년 북한형법이 이후에 이루어진 개정형법들과도 차이를 보이는 편제상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총화’(제1편)로 칭한 ‘형법총칙’의 한 장인 제2장에 ‘형사정책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며, 그 첫 조문이 범죄를 정의한 이른바 ‘사회적 위험성’ 조항이다.⁸⁵⁾ 여기서 ‘사회적 위험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는 물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의해 수립된 법률질서로 유지되는 사회주의 사회이다.

한편 그 뒤를 잇는 제8조는 형법 “각칙에 규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고 해로운 결과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법에 해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 표지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 하고 투쟁·계몽·교육을 통해 인민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지만,⁸⁶⁾ 아울러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기능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도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⁸⁷⁾

한편 1950년 북한형법 제9조는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고 규정함으

83)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이하의 1950년 북한형법 규정은 강구진, 앞의 책, 297쪽 이하에 실린 (북한법률) ‘자료편’을 참조한 것이다).

84) 20세기초 이른바 ‘사회방위론’에서 유래한 ‘사회적 위험성’ 개념을 토대로 사회주의형법의 모델이 발전한 경위에 대해서는 권오걸,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법적연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 (Ⅶ) -경제·사회·인권실태 분야, 통일원, 1991, 428쪽 이하 참조

85) 이 장에는 범죄에 관한 정의(제7조), 사회적 위험성 없는 행위의 처벌불가능성(제8조), 유추적용의 허용(제9조), 범죄에 대한 형벌적용(제10조), 고의와 과실(제11조), 의료처분(제12조), 교정처분(제14조), 정당방위(제15조), 긴급피난(제16조), 해방전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여부(제17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86) 김일수, 앞의 글, 1995, 193쪽 참조.

87) 북한형법상 ‘사회적 위험성’과 관련하여 피상적, 편향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논평과 이해의 시도로는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1990, 45쪽 및 51쪽 이하를 참조

로써 유추해석 및 유추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근대적 법치국가형법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⁸⁸⁾ 이러한 유추해석의 허용에 대해 북한형법학자는 “계급적 원수들의 새로운 반항형태들과 예리하게 투쟁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북한) 형사규범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항변하며, 다만 형법 제9조는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⁸⁹⁾ 기존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반혁명적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을 도구로 계급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로서, 이는 북한형법 제9조의 ‘유추적용’과 제7조의 ‘사회적 위험성’이 결합할 때 형법적 가벌성의 임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권보호, 즉 보장적 기능은 뒤로 한 채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체제보안의 기능에 편향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북한형법의 정치형법적 특성을 보여주는 조항들이라 할 것이다.⁹⁰⁾

나. 1974년 형법개정과 형법 강화

1974년 12월 19일 채택되어 1975년 2월 1일 시행된 ‘1974년 북한형법’은 그 구성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1950년 제정형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법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이 개정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유린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된다.⁹¹⁾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로서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강화운동’ 차원에서 사회주의법의 통제력 강화가 사상혁명의 촉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구헌법인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채택된 1972년 12월 28일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헌법상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혁명

88) 강구진, 앞의 책, 182쪽. 이 규정 또한 1922년 소련형법 제10조 및 1926년 소련형법 제16조에 규정되었던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혁명적 형법원리를 그대로 모방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김일수, 앞의 글, 1995, 194쪽).

89)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77쪽 이하(강구진, 앞의 책, 182쪽에서 재인용).

90) 김일수, 앞의 글, 194쪽(같은 취지의 그 밖의 문헌에 대해서는 같은 글 각주 54 참조).

91) 한인섭, 앞의 책, 351쪽.

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⁹²⁾ 이러한 배경에서 1974년 북한형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원색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형법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착취계급청산을 위한 투쟁이 그 중심에 서있다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일종의 “이원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한편으로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철저한 진압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인민대중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적 잔재”의 근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4년 북한형법은 ‘반혁명적대분자’들은 철저히 ‘진압’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그 과제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일반범죄자’들은 ‘제재’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와 사회의 질서, 혁명적 규율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이는 반혁명범죄 및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이원적으로 대별하여 추진하는 북한의 “형사정책의 계급적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1974년 개정형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형법을 조선노동당 형사정책 집행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도록 노골적으로 정치형법화하여 “국가주석의 보위 및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를 위한 사회주의체제 관리”를 형법의 최우선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⁹³⁾

북한에서 반혁명범죄는 사회주의 체제 및 경제적 기반을 교란하고 파괴하며, 체제불만자들에게 반혁명적 행위를 부추기고 부르조아반동사상을 유포하여 반체제 행위를 하도록 책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극악한 범죄로 분류된다.⁹⁴⁾ 1974년 개정형법은 반혁명범죄의 유형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대내 및 대

92) 개정배경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Ⅱ): 형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69집, 1993, 116쪽 이하 참조

93) 김일수, 앞의 글, 196쪽.

94) 김일수, 앞의 글, 197쪽.

외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범죄, 조선민족 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규율하였다(제51조-제66조).⁹⁵⁾ 이러한 반혁명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제정형법에 비해 구성요건을 추상화함으로써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정형을 국가주권적대죄보다 높였을 뿐 아니라, 방임죄 규정을 신설하여 관여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연좌제 처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뿐 아니라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나 형의 집행유예도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주의를 완강하게 견지하였다.⁹⁶⁾

반면 북한에서 착취제도의 산물로 여겨지는 일반범죄는 착취제도 하에서 형성된 개인주의·이기주의 등 낡은 사상의 잔재가 발현되어 일으키게 되는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에 따라 사상교양 및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②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감행의 틈과 조건을 차단하며, ③ 발생한 범죄는 모조리 적발하여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범행기도자들에게 적발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범행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당의 형사정책적 원칙으로 삼는다.⁹⁷⁾ 다시 말해서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대처하는 반면,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독특한 ‘이원주의 형사정책’을 채택·운용한 것이다.

제정형법과 마찬가지로 1974년 북한형법도 유추 해석·적용을 허용하고 있다(제15조). 한편 1974년 북한형법이 주체사상을 지도적 관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의 형사정책적 지침이 사회주의형법학의 범죄론에서 그 핵심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위험성’ 표지의 기능과 역할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⁹⁸⁾ 다른 한편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법이론과 법률 전반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정당화하고 이를 인민과 국가정권기관의 담당자들이 생활화하도록 하는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론’으로 정립되었다.⁹⁹⁾

95) 1974년 북한형법을 소개하고 있는 법무부 자료(북한법연구(VII) -신형법, 법무자료 제128집, 1990)도 당시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96) 김일수, 앞의 글, 198쪽; 한인섭, 앞의 책, 353쪽.

97) 김근식, 형법학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1쪽(한인섭, 앞의 책, 352쪽에서 재인용).

98) 김일수, 앞의 글, 199쪽.

다. 1987년 형법개정과 형법 완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무기로서 강화되었던 ‘사회주의형법’이 ‘주체형법’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형법개정이 1987년 2월 5일 북한형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주체의 형법이론’은 주체사상의 토대 위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법률적 현상을 고찰하여 근로인민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이른바 ‘주체의 법이론’¹⁰⁰⁾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범죄현상과의 법적 투쟁을 성과 있게 이끌어 나가는 실천적 무기의 하나로 간주된다.¹⁰¹⁾

1987년 북한형법의 편제상의 특징은 1974년 개정 형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편이 삭제되었으며, 제1조에 표제어 없이 규정된 ‘형법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1974년 북한형법 제4조가 ‘주석의 보위’,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 ‘주체사상의 일색화’ 같이 강경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형법의 임무를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을 절제하며 비교적 순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¹⁰²⁾ 같은 맥락에서 개정형법상의 가장 큰 형사정책적 변화는 반혁명범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원칙이라는 당의 형사정책적 기초가 순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반혁명범죄의 명칭도 ‘반국가적 범죄’로 바뀌며 16개이던 조문의 개수도 12개로 줄

99) 이에 관한 널리 알려진 저작이 바로 김정일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이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요체란 사회주의 법규범과 규정은 인민과 수령의 것이므로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집행되어야 하며 무조건적 의무적인 복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로, 법규범과 규정의 끊임없는 개선완성, 둘째로 인민대중에게 혁명적 준법의식을 넣어주는 해설과 교양(준법교양)의 강화, 그리고 셋째는 법적 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할 것 등이다(한인섭, 앞의 책, 355쪽 이하).

100) 주체의 법이론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방도로 준법교양의 강화, 사상투쟁과 군중적 투쟁의 강화 및 법적 통제의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한다.

101) ‘주체의 형법이론’ 또는 ‘주체의 형벌이론’은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법학자의 최근 글로는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33쪽 이하 참조: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인것만큼 반드시 당적, 로동계급적립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7권 344페이지) 라고 한 김정일의 말을 인용하여 ‘주체의 형법리론’을 설파하고 있다.

102) 김일수, 앞의 글, 200쪽; 한인섭, 앞의 책, 360쪽.

어 들었으며, 법정형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아울러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견지되었던 ‘사회적 교양위주의 법적 제재 배합’ 원칙이 모든 범죄와의 투쟁에서 형사정책적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제2조).

1987년 북한형법의 형사정책기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규정은 제3조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법무생활의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 및 균중적 투쟁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상투쟁의 정책노선에서 형법이 갖는 동원기능을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5조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⁰³⁾

1987년 북한형법 제10조는 형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추를 허용하고 있던 하지만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유추할 수 없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유추해석에 의미 있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떤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유추적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추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명백히 ‘범죄’여야 하는 등 제10조에 규정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⁰⁴⁾

나아가 1987년 북한형법 제8조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시법주의’ 및 ‘신법우선주의’를 규정하여 현대법치국가적 소급효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950년 제정형법에 규정되었

103) 김일수, 앞의 글, 200쪽.

104) 북한학자 김근식의 해설을 토대로 한 조건의 간략한 해설에 대해서는 한인섭, 앞의 책, 361쪽 이하.

다가 1974년 형법강화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것을 다시 정상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형법개정을 통해 형사제재분야에 나타난 특징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자유형의 단일화’라고 할 수 있다. 자유형의 단일화는 1974년 북한형법에서는 징역형과 교화노동형으로 두 종류의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교화노동형을 폐지하면서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⁰⁵⁾ 선거권 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종전과 달리 반국가적 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 반면, 전형적인 자격형인 자격박탈과 자격정지가 1987년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다.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배제가 규정되었으며(제42조), 형사제재 완화의 기능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집행유예 규정에서 범죄종류에 따른 제한요건이 삭제됨으로써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제37조).

라. 2004년 형법 전면개정과 패러다임 변화

1987년 형법개정 이후 1995년과 1999년에도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지만 2004년 전면개정이전까지는 큰 틀에서 1987년 북한형법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개정 북한형법이 1987년 형법과 다른 점은 교양처분을 14~16세의 형사미성년, 즉 청소년 범죄자뿐 아니라 17세 이상의 성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점¹⁰⁶⁾에서 1974년 엄벌주의형법으로부터 전향한 1987년 형법의 형법완화의 동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형선고가 가능한 연령이 1950년 18세 이상이다가 1974년 개정에 의해 17세로 낮추어졌던 것을 1999년 개정을 통해 다시 18세로 환원시킨 것도 긍정적인 발전이다. 아울러 범죄의 준비(예비)와 미수에도 기수와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되 양형단계에서만 고려하

105) 교화노동형은 사회주의형법에 고유한 “사회적 교양위주의 형벌”이라고 주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의 폐지는 “행형정책의 실패 내지는 다소간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 견해로는 한인섭, 앞의 책, 364쪽.

106) 1987년 및 1999년 북한형법 제11조는 형사책임능력을 규정을 규정하면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교양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2012 현행형법은 제11조에서는 형사책임나이(14세)만을 규정하고 ‘사회적 교양처분’은 형사소송법 제115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도록 하였던 것을 1999년 북한형법은 준비(예비)는 미수보다, 미수는 기수보다 가 법계 처벌하도록 차별화하여 형사제재의 합리화 경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⁷⁾

전면 개정된 2004년 북한형법은 9개장에 30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8개장 16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1999년 북한형법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확대된 것부터 우선 괄목할만한 외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북한형법상 처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유추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근대형법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⁸⁾ 한편으로는 총칙상 죄형법정주의가 채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칙의 개별구성요건들의 구체화, 명확화가 짝을 이루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⁹⁾ 한인섭 교수는 2004년 북한형법의 개별구성요건 명확화·구체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바 있다.¹¹⁰⁾

〈표 3-1〉 2004년 북한형법상 개별구성요건 명확화·구체화 사례

1999년 북한형법	2004년 북한형법	명확화·구체화 내용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을 조직한 것 같은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무장폭동에 참가한 자는 ...	제59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	다수의 규정의 '것 같은' 등 이른바 '기타조항'을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해 명확화(1999년 형법 규정 중 44, 47, 52, 103, 104, 126, 145, 149조 해당)
제45조: 테로한 자는 ...	제60조: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 행위를 한 자는 ...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한 명확화
제51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	제66조: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	적대행위 범위의 명확한 규정
제48조: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는 ...	제63조: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	행위태양의 명확한 열거

107) 1999년 북한형법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백규, “북한의 1999년 형법개정의 의미와 평가”, 인권과 정의 2003년 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1쪽 이하,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006, 73쪽 이하 참조

108)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415쪽.

109) 한인섭, 앞의 글, 2005, 420쪽 이하 참조

110) 한인섭, 앞의 글, 2005, 421쪽의 표 참조.

아울러 한 조문에 여러 행위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형벌이 세분화되지 않은 채 중한 범죄와 경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는 불합리한 규정방식을 폐기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행위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부합하는 형벌의 종류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¹¹¹⁾ 법정형의 합리화를 도모한 모습도 포착되며, 이는 형법 조문의 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표 3-2〉 구성요건 및 형벌 세분화의 예

1999년 북한형법	2004년 북한형법
제72조: - 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우거나 -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 계획실행정형을 거짓 보고하거나 -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 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¹¹²⁾	제127조(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9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1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111) 한인섭, 앞의 글, 2005, 422쪽의 표 참조.

112) “-” 표시는 조문비교의 편의상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이처럼 2004년 북한형법이 전면개정을 통해서 이전에 비해 구성요건이 명확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형법적용 과정에서 사법당국에 의한 일방적·자의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유나 리(Euna Lee)와 로라 링(Laura Ling)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재판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데,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북한 중앙재판소(현 최고재판소)는 북한 형법 제69조(조선민족적대죄)와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따라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하였다. 조선민족적대죄에 대해 북한형법은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6월 16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미국 여기자들은 “○○○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비법일경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이 주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하였는데, 이것이 “공화국을 비방 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라는 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형법 규정에 의하면 조선민족적대죄는 외국인이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북한 공민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북한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형법 제69조는 외국인인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조선민족적대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족적 불화’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2011, 18쪽 참조).

형법각칙의 편제상 큰 변화는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제4장으로 편제된 것과 경제형법적 조항들이 형법각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북한사회의 변화상이 형법에 투영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각칙상의 변화로는 의료형법 관련 조항, 문화재보호규정, 그리고 매음, 음탕행위, 도박, 미신행위, 비법혼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¹¹³⁾

2004년 북한형법개정의 또 다른 형사정책적 의미는 형사제재론상의 상당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87년 단일화 되었던 자유형의 세분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처분’의 형사제재화 및 이른바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확대로 나타난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북한형법에 의해 ‘교화로동형’이 폐지되고 징역형이 ‘로동교화형’으로 개칭됨으로써 북한형법상 자유형은 ‘로동교화형’으로 단일화된 바 있으며, 무기자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4년 북한형법은 ‘로동교화형’을 유기와 무기, 즉 ‘유기로동교화형’과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구분하면서 무기자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동시에 ‘로동단련형’을 신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유형의 형태를 세 가지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¹¹⁴⁾ 유기로동교화형, 즉 유기자유형(유기징역형)은 1년¹¹⁵⁾부터 15년까지로 하며,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하여도 1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⁶⁾ 로동단련형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하며, 이 역시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하여도 2년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¹¹⁷⁾ 유기 및 무기의 로동교화형은 기간의 차이 외에 집행상의 구분이나 차이는 없으며, 로동단련형은 1987년 폐지되었던 ‘교화로동형’¹¹⁸⁾의 부활로 볼 수도 있다.

교양처분¹¹⁹⁾과 의료처분은 이미 1950년 북한형법에서부터 형법 및 형사소송법

113) 법원행정처, 앞의 책, 2006, 83쪽; 형법각칙상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것은 한인섭, 앞의 글, 2005, 429쪽 이하를 참조!

114) 2004년 북한형법 제27조(형벌의 종류).

115) 기존 하한은 6월이었다(1987년 북한형법 제24조).

116) 2004년 북한형법 제30조.

117) 2004년 북한형법 제31조.

118) 1950년 북한형법 제33조에 따르면 “교화로동은 1일 이상 1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1974년 북한형법의 구체적 조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6개월부터 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북한법연구(VII) -신형법-, 법무자료 제128집, 1990, 219쪽 참조.

119) 1987년 북한형법은 제11조에서 ‘교양처분’이라 칭하나, 1950년 북한형법 제14조에서는 ‘교정처분’이라 칭하였다.

에 규정되고 있으나 2004년 북한형법은 기존에 이를 ‘형사책임나이’에 관한 조항과 결부시켜 규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규정인 제49조에 따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규정하고 미성인(미성년자)은 물론 성인인 범죄자라도 그의 개준성 및 행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처분을 원칙적으로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엿보인다는 해석의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¹²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병자에게 적용하는 ‘의료처분’은 한편으로는 실제 법적인 책임능력 내지 무능력과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상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및 중지절차 관련된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제46조에서 의료처분도 세분화하여 1.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특별격리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일반격리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지역의료처분’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치료·관리규정 및 절차를 두고 있다.

〈표 3-3〉 2004년 북한형법상 형벌의 변화

구 분	1987(1999)년 북한형법	2004년 북한형법
기본형벌	사형 로동교화형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부가형벌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비범죄화 (다이버전, 보안처분 등)	교양처분 의료처분(정신장애범죄자)	사회적 교양처분 의료처분(정신장애범죄자)

마. 2007년 형법부칙에 의한 형법개정의 “반동성”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에도 2005-2007년에 매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의 일부개정을 단행하였다. 이후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이른바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을

120) 한인섭, 앞의 글, 2005, 429쪽.

제정하였다.¹²¹⁾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마약 밀수·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북한형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해당범죄’를 확대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를 규정하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정상이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가중요건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적용상의 자의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례외적으로 무기로 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제23조는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애당초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도 북한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¹²²⁾ 이처럼 2007년 북한형법부칙을 통한 형법개정은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로 평가될 뿐 아니라,¹²³⁾ 1987년 및 2004년 전면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온 북한형법의 현대화의 관점에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이전 북한 형법이 정치형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2004년 형법개정은 많은 경제관련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북한형법의 중심이 경제형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²⁴⁾ 그런데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은 일반범죄에 대해 무기자유형은 물론 심지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벌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반동적으로” 체제안보적 형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다시 형법의 중심을 정치형법으로 이동시켰다 할 수 있다.¹²⁵⁾

121) 비록 명칭을 ‘부칙’으로 하고 있긴 하나 이것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북한형법의 규정을 보충·변경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북한법체계상 부문법 내지 주요 법령의 하나로서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형법본문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2010), 236쪽 참조

12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59쪽 이하.

123)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2011, 20쪽.

124) 한인섭, “2004년 북한 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서울대), 제46권 제1호(2005), 193.

12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

바. 2009년 북한형법개정의 정치성

2009년 10월 19일 대폭 개정된 2009년 북한형법은 북한헌법상 천명된 선군사상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 가운데 하나인 파괴암해죄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을 강화하고(제64조), 불신고죄의 처벌대상으로 반국가범죄 이외에도 반민족범죄를 추가하였다(제71조). 아울러 국방관리질서침해범죄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범죄유형을 신설하고 처벌도 강화하였다.¹²⁶⁾ 이와 함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형법적 조치도 강화하였다.¹²⁷⁾ 2009년 북한형법은 이와 같이 일련의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¹²⁸⁾ 2009년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한 북한형법학자는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이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흡사 1974년 형법개정 당시의 형사정책적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어 북한에서 형법의 목적이 다시 체제보위에 쏠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¹²⁹⁾ 2009년 북한형법 개정에서 주로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¹³⁰⁾으로 평가된다.

심으로,” 238쪽 이하 참조

- 126) 예컨대 명령·결정·지시집행 태만죄의 대상에 국방위원회 위원회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결정·지시를 추가하였고(제73조), 무기·탄약의 파손행위 및 약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75조, 제76조, 제78조). 군수품생산 관련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거나 세분화하였다(제80조, 제81조). 국방비밀누설죄에서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더라도 가중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제88조).
- 127) 퇴폐물의 반입 및 유포만을 처벌하던 데서 보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고(제193조), 마약사용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7조). 집단적 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 날조·유포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9조, 제220조, 제222조).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33조).
- 128)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2011, 22쪽.
- 129)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33쪽. 조용춘은 형벌 적용의 둘째 목적은 일반범죄자들을 제재과정을 통해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에서 건져내어 사회주의근로자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이며, 셋째 목적은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자들에게 강한 경고와 자극을 주어 범죄의 길에 나서지 않게 하며 균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반범죄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 13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66쪽.

사. 2012년 현행 북한형법

2012년 5월 14일 최종 개정된 북한형법은 총 9장 29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북한형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헌법개정을 반영한 개정이라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체제의 형법’이며 ‘현행형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개정의 구체적 특징에 관하여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사정책과 형법 사이의 북한형사실체법

서론적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형법에 대한 일반론적이고 기술적인 서술과 언급, 사회주의형법이론 또는 주체형법이론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를 표적으로 한 비판과 폄하는 그동안 상당히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호 이해에 의미를 두고 통합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치 보이지 않지만 확연하게 그어진 어떤 타부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위축과 신중으로 점철되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한 북한연구자가 “북한에도 ‘당연히’ 법이 있다”는 표제어로 던진 화두는 분단의 일상과 복잡성을 함축한 일단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¹³¹⁾ 이는 비아냥거림으로 그칠 만큼 단순치 않은 “북한에도 법이 있나?”, “북한법도 법인가?”라는 물음들과도 맞닿아 있다. 이 연구의 관점에서 이를 구체화하면 “북한형법도 형법인가?”하는 물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형법인가?” 라는 물음로 치환되어 다가온다. 여기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그렇다!”는 답을 던질 수 있는 열린 자세만이 의미 있는 이해와 통합의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규범으로서의 북한형법과 법현실로서의 형사사법실무는 둘 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폐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현실은 형법규정이나 형법이론보다 더 폐쇄적이어서 탈북자 등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단지 가늠할 수 있었을 뿐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형사사법에 대한 연구의 실익은 무리하게 ‘법과 현실의 괴리’에 천착하기 보다는 북한형법의 발전과정

131) 권영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2011, 17쪽.

및 주요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 발전의 요소 및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형법을 짚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긍정적”이라 함은 대립과 적대 관계에서 사용될 수 없는 언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로서의 남북관계를 전제로 형사사법통합적 관점에서 긍정적, 건설적, 희망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이러한 희망과 긍정을 단초로 새로운 건설적 연구의 실마리를 찾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

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의 북한형법

북한에도 법이 있고, 형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아주 “유일한 형법”이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형법이라 지칭되는 법이 유일한 ‘형법전’ 하나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일반형법’이라고 부르는 ‘형법전’이 존재하고 그 이외에도 대상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규제하는 (‘청)소년형법’을 비롯하여 규제영역에 따라 또는 제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별형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 존재하는 형사실체법으로는 우리가 ‘북한형법’이라 부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¹³²⁾이란 단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그 밖에 형사실체법인 부수형법, 특별형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실체적 근거가 되는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유일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화된 특별법 입법방식에 따라 「의료법」이라 하면 아마 그 말미에 일정한 범위내행위를 범죄화한 처벌규정도 함께 담고 있으리라는 것을 어느 형법학자든 당연시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되레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문제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의료법」상 형사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맨 마지막규정인 제51조에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이 법을 어겨 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의 모든 특별법은 이런 식으로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규정하며, 실제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은 예컨대 형법 제198조 이하에 의

132)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127쪽 참조

료사고죄, 치료거부죄, 비법의료죄, 불량약품생산죄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반형법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형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별형법에 의존하는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는 150개가 넘는 특별형법을 가진 “특별형법의 천국”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상징형법적 중형주의에 기대는 기형적인 형법관이란 비판과 함께 “형법의 사문화 내지 공동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¹³³⁾

물론 현대사회의 생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북한형법의 규정방식을 대안 모델로 하여 모든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특별법 만능주의가 낡은 일반형법전의 기능 약화와 특별형법이란 도구를 빌어 형법체계를 무시하고 훼손한 엄벌주의 경향 및 법치국가적 형법원리들의 손상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반형법을 중심으로 한 형법체제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회자되는 우리 현실에서 “절대적인 무게중심을 가진 형사실체법”으로서의 (일반)형법전을 중심으로 한 ‘형법회복’ 및 형법체제정비에 북한형법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북한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유추금지가 관철되면서 2004년 북한형법의 조문의 개수가 두 배 가량 팽창된 데서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이러한 형법비대화의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형법”의 전통에 따라 유추해석·적용이 허용됨으로써 ‘유일한 실체형법’으로서의 형법전의 기능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의 관철로 형법전이 비대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형법으로 피난해야 하는 “긴급피난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습관적으로 특별형법으로 도피하는 형사입법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어떤 형법적 규제 대상을 형법의 전체적 체계정합성과 법치국가적 원칙들을 꼼꼼히 고려하여 형법전 안에 규정하기보다 이러한 고려 없이 손쉽게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려는 경향에 대해 특히 형사입법자의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33) 우리나라 입법자의 특별형법 남용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박상기 외, 형사특별법론: 5대 형사특별법(개정판), 2012, 39쪽 및 45쪽 이하 참조.

〈표 3-4〉 북한형법 개정과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규정의 변화

1950	제9조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
1987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2004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2012	제6조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나. 형법의 한계로서의 형사정책?

1950년 북한형법 제정 이래 북한형법 개정의 역사는 당의 형사정책이 형법을 이끄는 질곡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화와 진보의 역사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냉전이 클라이막스로 치달던 시기의 형법개정인 1974년 북한형법 제4조의 거칠고 원색적인 ‘형법의 임무’ 규정을 제외하면 제정형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북한형법상 ‘형법의 임무’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및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으로 압축된다. 사회주의국가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이 탈색될 때 이는 곧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시민(국민 개인)의 법익으로 바로 치환 또는 호환 가능함을 보여준다.

형법학자들이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법치국가적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의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하다. 즉 이와 정반대로 형법 위에 당의 형사정책의 위치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형법과 북한형법이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대! 아니다, 거꾸로다!”를 두고 과연 각각 어느 한 진영을 명쾌하게 분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재판’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술한 사안들은 우리 형사사법사에서 어떻게 정치와 정책이 법을 우회하거나 좌지우지하였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이데올로기·체제대립의 상황에서 상호간의 법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첨예화·악마화 하기 보다는 가능한 순화하여 이

해의 지평을 최대한 넓힐 때 상호이해의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곧 그 형법의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국가형법”의 임무를 이 공화국의 특징에서 분리되어 달리 규정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¹³⁴⁾

〈표 3-5〉 북한형법 개정과 ‘형법의 임무’ 규정의 변화

1950	제1조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
1974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및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사회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
1987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004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2012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다. 범죄와 제재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위험성’

마찬가지로 사회주의형법으로서의 북한형법에서 실질적 범죄개념을 담고 있는 ‘사회적 위험성’ 개념도 이미 법치국가적 순화가 가능한 개념이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도입 및 유추금지 및 맞물린 형법각칙의 구체화, 명확화, 세분화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성’으로 규정되는 실질적 범죄개념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범죄화’ 및 ‘재사회화’ 기능과의 맥락이 북한형법 발전과정에서 적어도 맹아로서 싹트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34) 현행 중국형법(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조도 형법의 임무를 그 기초에 있어서 북한형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형벌을 사용하여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함으로써 국가안전권을 보위하고, 인민민주전정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집체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개인의 소유재산,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 민주권리와 그 밖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법무부, 중국형사법, 2008). 이는 “사회주의국가질서와 사회주의사회의 보호와 보안”이란 표제 하에 형법의 임무를 규정한 구 동독(DDR) 형법 제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Ministerium der Justiz (DDR) (Hrsg.), Straf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1984, 17쪽 참조).

‘범죄의 개념’을 규정한 현행 2012년 북한형법 제10조를 비롯하여 각각 형벌적용과 사회적교양처분적용의 원칙과 요건을 정한 제7조와 제50조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형법의 임무’ 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형법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사실상 ‘법익론’에 접근해 가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 적어도 남북한의 “형법”통합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접합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표 3-6〉 북한형법 개정과 범죄 및 ‘사회적 위험성’개념의 변천

1950	제7조 죄라 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
1987	제9조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2004	제10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2012	제10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7조(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조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라. 계급형법적 이원주의형사제재

북한형법 제3조(범죄자의 처리원칙)는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으로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북한형법상 형사제재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학자 조용춘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 대표적으로 드러난다.¹³⁵⁾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은 첫째로,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다. (...) 반국가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교양개조가 아니라 징벌을 통하여 다시는 반항할수 없도록 진압

135)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33쪽 이하.

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정치성과 적대성을 띤 반국가범죄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은 둘째로, 일반범죄자들을 제재과정을 통하여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의 길에서 건져내고 사회주의 근로자의 대렬에 서게 하는 것이다. (...) 이는 일반범죄의 성격과 발생근원, 그와의 투쟁목적과 방법, 일반범죄자들을 공약 개조한 경험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현대자본주의국가 형법학자들에게도 오늘날 익숙해진 이른바 ‘적대형법’과 ‘시민형법’ 양분론자들의 시각과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개선불가능한 적으로서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한 진압적 제재를, 개선 가능한 시민(공민, 인민)의 일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교양개조, 즉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형사제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형제도와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그리고 때때로 전자발찌나 화학적거세로 대처하는 성범죄자제재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자를 더 이상 시민으로 보지 않는 적대형법적 형사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북한형법의 형사제재의 다양화 경향과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 나아가 형사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된 ‘손해보상’(원상회복)제도 등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남한형법에 못지않은 재사회화형법 및 회복사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도와 법현실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아쉬운 실정이라 하겠다.

〈표 3-7〉 북한형법상 형벌의 종류의 변화

1950년 북한형법	1974년 북한형법	1987년 북한형법	2004년 북한형법	2012 북한형법
- 사형 - 징역 - 교화로동 - 벌금 - 일정한 권리의 박탈 -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	- 사형 - 징역형 - 교화로동형 - 선거권박탈형 - 재산몰수형	기본형벌 - 사형 - 로동교화형 부가형벌 - 선거권박탈형 - 재산몰수형 -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기본형벌 - 사형 -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 부가형벌 - 선거권박탈형 - 재산몰수형 - 자격박탈형 - 자격정지형	기본형벌 - 사형 -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 부가형벌 - 선거권박탈형 - 재산몰수형 - 벌금형 - 자격박탈형 - 자격정지형

제3절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개관

1. 최근 북한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 한계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자 리창세가 (북한) 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라고 한 것처럼 북한에서 형사소송은 공공연히 선군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⁶⁾ 또 다른 학자 역시 북한 형사소송법이 선군정치를 실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⁷⁾

물론 2004년 전면개정된 현행 북한형사소송법은 그 이전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심자(피의자)·피소자(피고인)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소 및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체포영장제도도 명확히 하고, 강압·유도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부정하는 등 인권보장적 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사·예심기관이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방법을 규정하여 법률적인 사법권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인권보장적 차원의 괄목할 만한 개선사항으로는 야간심문금지(제163조), 중복조사금지(제150조), 비밀누설금지(제15조), 피심자에 대한 권리통고(제169조), 증인구인시간의 제한(제227조), 재판정구속금지(제283조), 제1심 및 제2심 재판기간의 단축(제287조) 등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¹³⁸⁾

136)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29쪽 이하. 그가 이렇게 보는 네 가지 이유는 첫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저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취급처리를 기본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국방관 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으며, 넷째,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37) 리명일,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2권 제2호, 60쪽 이하.

138)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2008, 30쪽.

물론 형사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다.¹³⁹⁾

첫째, 북한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실제법과 절차법에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계급노선 관철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균중노선 관철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수사와 예심절차에서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거리가 먼 부분은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음이 없이 체포·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셋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북한형사소송법 제271조는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폭 넓은 재판공개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제도나 무죄 추정원칙 등 형사소송상 적법절차를 크게 미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내지는 당적 영도를 인정하여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다음 장에서 최근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형사사법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진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및 주목할 만한 특수사법제도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특수사법제도들 중에서도 이른바 ‘인민재판’으로 불리는 ‘현지공개재판’과 동지심판제도를 비롯한 ‘유사형사재판’ 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본다.¹⁴⁰⁾

139) 한명섭, 앞의 책, 30쪽 이하;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006, 25쪽 이하.

140)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참조.

2. 북한형사사법제도의 주요 특징

가. 재판의 독립성 부정과 재판에 대한 당적 영도와 통제

북한의 판사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는 사실만 고려하면¹⁴¹⁾ 북한의 판사의 지위와 그 독립성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 우위 원칙에 따라 노동당이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그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¹⁴²⁾ 결국 최고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나아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¹⁴³⁾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하는 독특한 형태의 규정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법권의 종속성 및 재판독립의 불인정은 북한의 전체주의국가적 재판제도의 본질 및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노동당이 국가와 정부의 원동력이고 정치·경제·사상 등 모든 분야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당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활동을 지도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엄격히 수행하는 것을 통치원리로 하고 있기에 민주법치국가적 권력분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헌법은 재판활동을 통하여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재판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2조). 김정일은 재판기관이 검찰기관 및 사회안전기관들과 함께 당과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기관이라 규정한 바 있다.¹⁴⁴⁾ 북한학자 장성철은 북한의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은 노동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검찰

141) 최고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북한 헌법 제91조 제12호), 그 외 최고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지방주권기관법 제10조).

142) 최고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헌법 제168조).

143) 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144) 인민보안성, 법무정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25쪽.

기관과 재판기관들이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준법감시를 강화할 때만이 국가의 법이 정확히 집행되고 당 정책이 정확히 관철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⁴⁵⁾

나. 배심제도의 배척과 인민참심원제도의 채택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 사법국이 내린 포고령 제4호「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에 따라 소련의 인민참심제를 모방한 인민참심원제도를 도입하였다.¹⁴⁶⁾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¹⁴⁷⁾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로 전해지며, 따라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¹⁴⁸⁾

북한의 인민참심원제도는 비법률가이며 비상임인 인민참심원은 이론상 재판소에서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소를 구성하여,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해당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업판사와 아무런 권한의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학자들은 참심원제도를 통하여 인민들이 재판소구성에 다수로 참여하고 재판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 사법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착취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적 수단이라 폄하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¹⁴⁹⁾

145) 장성철,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검찰, 재판기관의 중요과업,” 정치법률연구, 2007년 제2호, 29쪽.

146) 법원행정처, 앞의 책, 27쪽.

147) 최고재판소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 선거한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실제로 인민참심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참심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다(안소울, “북한의 재판제도,”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374쪽 이하). 한편 인민참심원의 재판상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2005년 북한이탈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견이 52%, 모르겠다는 대답이 37.4%를 차지했고,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불과 3%에 불과하여(이에 대해서는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65쪽 참조) 아직 정확한 파악은 불기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148)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54쪽 참조.

149) 북한학자들은 배심원들만으로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하여 사실인정에만 관여케 하는 영미법계 국

다. 편의관할로 인한 심급제의 약화

북한의 재판소제도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 2심제로 구성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⁵⁰⁾

북한의 심급제
<p>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고, 관할 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7조).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항의 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민재판소나 도(직할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제129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제126조). 북한의 심급제도는 최고재판소가 1심으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2심제로 되어 있는데 상급재판소의 권한이 넓고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급재판소는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하급재판소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심리·재판을 하거나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p>

북한에서는 이처럼 원칙적으로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급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하급재판소의 사안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편의관할”을 허용함으로써 심급제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편의관할은 경우에 따라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심급제의 보장이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앞서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가들의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착취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적 수단의 하나로 배심제를 이용하고 있다거나(조은향, “배심제도의 발생에 대한 고찰,”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43쪽), 배심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압박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재판이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장청송,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5권 제1호, 2009, 150쪽).

150)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56쪽 이하 참조.

라. 검사에 의한 재판감시의 제도화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및 영도는 북한형사사법에서 검찰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와 예심뿐만 아니라 재판을 감시(형사소송법 제14조)하게 하는 것으로써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검찰감시법에 따르면 검사의 재판감시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¹⁵¹⁾

검사의 재판감시활동
<p>우선 검찰감시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으로 정의하고(검찰감시법 제1조), 검사를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로 내세우고 있다(동법 제7조). 검사는 재판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재판에 대한 감시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 심리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요구하여 볼 수 있다(동법 제26조). 심지어 검찰감시를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과 공민에게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설명과 문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회의에 참가하거나 회의록을 볼 수도 있다(동법 제30조). 검찰감시과정에 범죄와 위법행위를 확정하였을 경우 감시조서를 만들 수 있다(동법 제28조). 검사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때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8조).</p>

3. 북한 형사사법제도상 특수 제도

가. 현지공개재판(인민재판)

북한형사사법제도상 현지공개재판(이른바 ‘인민재판’)을 명문화하고 있는 북한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규탄함으로써 주민 일반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¹⁵²⁾ 현지공개재판은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151)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58쪽 이하 참조.

므로 학교운동장, 장마당, 마을회관 근처, 역전 광장, 강변, 영화관, 공설운동장, 농민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다.¹⁵³⁾ 현지공개재판의 대상은 탈북시도자나 절도 등 경제범에게 주로 실시하며, 인신매매나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도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범의 경우에는 현지공개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⁴⁾

나. 유사형사재판제도

정식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이른바 ‘유사재판제도’에 의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북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재판제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판결과 동지심판제도 및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정치범죄(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을 견지하며,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는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정치범죄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하고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4조).

동지심판(회)제도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이다. 동지심판은 종래 인민재판(군중심판)과 유사한 제도이나 그 의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동지심판제도는 1972년경 혁명동지를 위협에서 구제하고, 고쳐서 다시 쓰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아래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평가된다.¹⁵⁵⁾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감시법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152) 이를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설파한 바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16쪽).

153)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193쪽.

154)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70쪽 이하 참조.

15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630쪽 참조.

동지심판제도
<p>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사, 예심 기관의 부당한 수사, 예심 시작결정 또는 수색, 압수 행위를 취소하거나 수사, 예심 사건을 기각시키려 할 경우 2. 수사 일군 또는 예심원을 바꾸거나 침해된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려 할 경우 3.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하려 할 경우

동지심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특한 민중재판조직이다. 동지심판회는 국가기관·기업소·군부대·사회협동단체 및 각 지역 별로 조직되며, 상설형태가 아니라 심판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되는 비상설 임시기구이다.¹⁵⁶⁾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주민이 심판원 또는 방청자로서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주민의 정서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동지심판의 대상이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회주의 도덕성을 잣대로 삼아 범죄화 함으로써 사생활 통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동지심판회의 자의성 소지, 군중심리에 휩쓸린 감정적 판단 위험 등이 존재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지적된다.¹⁵⁷⁾ 특히 제재에 대한 법률적 불복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폐해가 더 심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¹⁵⁸⁾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⁹⁾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 있게 사는 생활이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인 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원래 관료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적 간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⁶⁰⁾

156) 법원행정처, 앞의 책, 633쪽.

157) 정광진, “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2010, 93쪽.

158) 법원행정처, 앞의 책, 635쪽.

159)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30쪽.

160)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 과학·백과사전출판

사회주의법무생활이론은 김정일이 1982년 12월 15일 헌법공포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북한 문헌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북한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생활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⁶¹⁾ 1992년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8조 제3항). 이 규정은 1998년 헌법 제18조와 2009년 헌법 제18조 및 2010년 헌법 제18조에서도 그대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 제3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 형사소송법 제6조는 “국가는 국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 및 군중투쟁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권력행사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기관의 간부들의 준법감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목적이 퇴색하면서 주민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평가되며,¹⁶²⁾ 북한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처럼 사회주의 건설을 제도적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¹⁶³⁾

사, 1980, 4쪽.

161) 이규창·정광진, 앞의 책, 114쪽 이하 참조.

162)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 64쪽.

163) 통일교육원,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07, 21쪽.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이 규 창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크게 형사사법제도와 형법, 형사소송 및 형 집행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을 살펴본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개정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는다. 이밖에 국내에 알려져 있는 2009년 북한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의 법무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인 력사법률¹⁶⁴과 정치법률연구 등의 북한 논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한 공식 언론 매체,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등의 북한 기구가 발표한 공식 성명 등에 나타나 있는 북한형사사법 관련 내용들을 분석한다. 또한 북한이 2014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실시되었던 자국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와 2014년 9월 13일 발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등 북한 공식 문헌의 관련 내용도 살펴본다. 한편, 국제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와 함께 통일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 등 참조 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지속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인민재판소를 확대하고 형사특별

164) 2010년까지는 ‘력사 법학’이었으나 2011년부터 ‘력사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재판에서 있어서는 군수(軍需)재판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형사재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긍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없는 형벌 부과와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1. 인민재판소의 확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되었다. 보편적정례검토 또는 국가별 정례검토라고도 불리고 있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구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2006년 유엔 총회 산하의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한다.¹⁶⁵⁾ UPR 대상 국가들은 심의를 위해 자국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은 자국에 대한 2차 UPR을 위해 국가보고서¹⁶⁶⁾(이하 “2차 UPR 북한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2차 UPR 북한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1차 UPR이 종료한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2차 UPR 북한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준비 과정을 간단히 언급한 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인 조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성과, 도전과 장애 목표, 결론 순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¹⁶⁷⁾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2차 UPR 북한보고서는 인민재판소가 모든 시·군 단위에 설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를 2차 UPR 북한보고서는 북

165) 북한에 대한 제1차 UPR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실시되었다.

166) UN Doc. A/HRC/WG.6/19/PRK/1(30 January 2014),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67) 2차 UPR 북한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통일과 법률 통권 제19호, 2014, 16쪽 이하.

한 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고 법 집행 및 법률 자문에 대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⁶⁸⁾ 북한의 재판소제도는 최고재판소(구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인민재판소는 시의 경우에는 각 시마다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군·구역의 경우에는 1-4개 군·구역에 1개씩 소재하고 있었다.¹⁶⁹⁾

참고로 북한의 검찰소제도는 최고검찰소(구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하여 도·직할시 검찰소 그리고 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으로 되어 있는데 2차 UPR 북한보고서는 검찰소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군·구역 검찰소는 인민재판소와 달리 이미 모든 시·군·구역에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⁰⁾

2. 특별형사재판제도의 변화

북한에서는 특별형사재판제도로 군사재판제도와 철도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후 재판소구성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군수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재판소구성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의 후속 작업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¹⁷¹⁾하면서 종전의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변경하였다.¹⁷²⁾ 북한은 이어 2011년 12월 21일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였는데¹⁷³⁾ 헌법에 맞추어 중앙재판소를 최고재판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고 규정하여 군수재판소를 도입하였다.¹⁷⁴⁾ 2012년 5월 14일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168) 2차 UPR 북한보고서, 제28항.

169)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129쪽, 141쪽 이하.

170) 법원행정처, 앞의 책, 509쪽.

171) 북한에서의 법의 개정은 수정과 수정보충이 있는데 부분적인 개정을 수정이라고 하고 큰 폭의 개정을 수정보충이라고 한다.

172) 2010년 4월 9일 헌법 제8절.

173)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174) 2011년 12월 21일 재판소구성법 제3조.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군수재판제도가 도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¹⁷⁵⁾ 그러나 2006년 10월 18일 수정보충된 이후 2012년 북한 법률출판사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따르면, 북한 형사소송법이 2011년 10월 19일과 2012년 5월 14일 수정보충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군수재판제도가 언제 도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현재 북한 학자들의 논문이나 북한의 관영 매체, 북한의 공식 문건 등에도 군수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군수재판제도의 실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2009년 4월 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대폭적으로 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선군(先軍)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적 지침으로 천명하는 등¹⁷⁶⁾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군수재판제도의 도입은 선군사상 내지 선군정치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⁷⁷⁾

아울러 북한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제도의 심급을 변경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철도재판만을 2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다.¹⁷⁸⁾ 이에 비해 2012년 5월 14일 수정보충된 형사소송법은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특별형사재판, 즉 군사재판과 철도재판, 군수재판의 심급관할을 2심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⁹⁾ 북한의 재판제도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되어 있지만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급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임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할제도가 명확하지 않다.

175) 2012년 5월 14일 형사소송법 제52조.

176) 2009년 4월 9일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177) 이규창, “김정은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 특징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통권 제17호, 2014, 23쪽.

178) 2006년 10월 18일 형사소송법 제129조.

179) 2012년 5월 14일 형사소송법 제52조.

〈표 4-1〉 북한 형사재판의 관할 및 심급제도 비교

구 분	구 형사소송법(2006. 10. 28)		현행 형사소송법(2012. 5. 24)	
	관할	2심	관할	2심
최고 재판소 (구 중앙 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 필요한 경우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제129조)	불가 (제359조)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제53조)	불가 (제358조)
도(직할시) 재판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 (제127조)	중앙재판소 (제129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고 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제51조).	최고재판소 (제356조)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제127조)	불가 (제359조)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제51조)	불가 (제358조)
인민 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제126조)	도(직할시) 재판소 (제127조)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제50조)	도(직할시) 재판소 (제51조)
특별 재판소	군사 재판소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제128조 제1항)	규정 없음	군사재판소: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제52조 제1항)	최고재판소 (제53조)
	군수 재판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군수재판소: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제52조 제2항)	
	철도 재판소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제128조 제2항)	중앙재판소 (제129조)	철도재판소: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제52조 제3항)	

3.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강력한 반발

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3일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다.¹⁸⁰⁾ 이 결의는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기로 결의(이하 “COI 설립 결의”)하였기 때문이다.¹⁸¹⁾ 이전에 유엔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모두 무력충돌이나 내전 상황에서 설치된 반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평시에 설립된 첫 조사위원회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¹⁸²⁾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세 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고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결의되었다.¹⁸³⁾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째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¹⁸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보고서¹⁸⁵⁾(이하 “COI 보고서”)와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보고서¹⁸⁶⁾(이하 “COI 상세보고서”)의 두 종류가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①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②차별, ③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④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⑤자의적 구금·고문·형집행 및 수

180) UN Doc. A/HRC/RES/22/13(9 April 201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1) COI 설립 결의, 제4항.

182) 김수암 외,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2013, 113쪽.

183) COI 설립 결의, 제4항. COI 설립 결의에 따라 마이클 커비(Michael D. Kirby, 호주)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인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세 명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84) COI 설립 결의, 제5항.

185)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86) UN Doc. A/HRC/25/CPR.1(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용소, ⑥외국으로부터의 납치 및 강제실종의 6가지 구분하여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상의 네 가지 관할대상범죄 가운데 하나인 반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⁸⁷⁾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⁸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situation)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⁹⁾

나. 북한 고위 관리 및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 언급

2000년대 초반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유엔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구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¹⁹⁰⁾이 임명되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¹⁹¹⁾을 제정한 이래 일본이 2006년 일본판 북한인권법¹⁹²⁾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5년 김문수 전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이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외 시민단체(NGO)들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발표는 기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

187) COI 보고서, 제74항-제79항; COI 상세보고서, 제1166항-제1210항.

188) COI 상세보고서, 제1195항.

189) COI 보고서, 제87항; COI 상세보고서, 제1218항.

190) 태국의 비딧 문타본(Vitit Muntarbhorn)이 2004년 6월 14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활동하였고, 그의 후임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2010년 8월 1일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91)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이 법은 2008년 북한인권 재승인법에 의해 4년 연장되었고, 2012년 재승인법에 의해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192) 정식 명칭은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로 2006년 6월 23일 제정되었다.

서가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의 형사처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¹⁹³⁾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 및 재판소제도,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등이 기관책임(Institutional accountability)이 있다고 결론지었다.¹⁹⁴⁾ 특히, COI 상세보고서는 ‘최고지도자’가 노동당 및 국방위원회와 별도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함으로써¹⁹⁵⁾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다. 북한의 반발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강조한다. 북한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으로 북한은 외국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외교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정간섭을 반대한다고 함으로써 자주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제17조). 이 같은 입장은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볼 수 있다.¹⁹⁶⁾

자주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외세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국제항공형법 분야의 경우, 1963년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¹⁹⁷⁾(일명 도쿄협약) 제24조 제1항은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⁸⁾ 북한은 1983년 8월 7일 도쿄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193) COI 보고서, 제80항.

194) COI 상세보고서, 제1166항-제1190항.

195) COI 상세보고서, 제1191항.

196) 리수영, “국가자주권존중의 원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4권 제3호사, 1998, 61쪽 이하; 한영서, “국가자주권존중은 국제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54권 제1호, 2008, 66쪽 이하.

197) 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198) 제24조 제1항: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계약국간에 협상을 통한 해결을 볼 수 없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중 어느 국가이든지 중재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요청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기구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중 어느 당사자든지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협약 제24조 제1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reservation, 북한에서는 보류라고 함)를 하였는데 북한 학자는 그 이유를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자주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⁹⁹⁾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당국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주권과 내정불간섭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고위 관리, 특히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체제의 전복(顛覆)을 의도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전에 없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직후 북한의 공식 반응, 북한에 대한 2차 UPR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에 대한 북한의 반응,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조평통과 국방위원회 성명, 북한 외무상의 발언 등에 반복되고 있다.

첫째,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인 같은 달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⁰⁾ 이 같은 주장은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반복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4년 2월 28일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비난하였다.

둘째, 2차 UPR 북한보고서는 인권분야의 국제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인권 분야 협력을 위해 진지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⁰¹⁾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2차 UPR시 북한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대

있다.

199) 박영수, “국제민용항공에서 항공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7권 제3호, 2001, 74쪽 이하.

200) “인권을 구실로 국제형사재판소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요 뭐요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감히 깎아내리고 압력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

201) 2차 UPR 북한보고서, 제119항-제124항.

한 2차 UPR 종료 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²⁰²⁾(이하 “2차 UPR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차 UPR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하여 모두 268개의 권고를 하였는데 이 가운데 북한은 83개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²⁰³⁾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가입,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를 거부하였다.

셋째, 북한은 2014년 9월 13일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이하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그 동안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체제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위 취약계층 분야의 법제정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즉, 북한은 국내법 차원에서는 2009년 4월 헌법개정시 헌법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조항을 명시한 이래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 인권법규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국제법 차원에서는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²⁰⁴⁾에 서명하고, 2014년 9월 9일에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²⁰⁵⁾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13일 북한의 인권보고서 발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자세로 대응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로 읽히지며,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겨냥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²⁰⁶⁾

202) UN Doc. A/HRC/27/10(2 July 201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3) 2차 UPR 인권이사회 보고서, 제125항.

20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5)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6)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2014년 9월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로 북한에 대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한층 노골화”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인권보고서 발표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인권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진실을 밝히고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13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은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다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리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⁷⁾

북한 체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분야의 법적 정비를 대외 선전 차원에서 실시하고 인권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는 인권보고서에도 반영되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인권보고서는 국제대사령(국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반대협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구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 등 인권분야의 국제기구와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²⁰⁸⁾ 그러나 인권보고서는 2003년 이후 채택되고 있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은 인권분야의 국제협력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²⁰⁹⁾

넷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2014년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우리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은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4년 9월 27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거론하며 거칠게 비난하였다.²¹⁰⁾ 2014년 9월 27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국제사회의 잇따른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 대화와 협력을 해

207)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2014, 99쪽.

208)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 보고서, 79-81쪽.

209)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 보고서, 80-81쪽.

210)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4일 제69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4년 9월 23일 뉴욕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제로 개최된 북한인권 고위급 회담에서 인권을 지키려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27일).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대표연설을 한 것은 15년 전인 1999년 백남순 당시 외무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유엔은 2014년 10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인권 침해 행위 관련자를 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 회람하였다고 한다. 이어 같은 달 2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14년 유엔 총회에서 다루게 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²¹¹⁾ 최종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2014년 11월 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2월 말 최종적으로 공식 채택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이상에서 살펴듯이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북한 핵문제와 결합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인권 문제의 중심에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형사법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4.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 부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첫째,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범죄 및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²¹²⁾(이하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하며 셋째,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을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행하고 넷째,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에게 인간적인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감 체계를 개혁하고 다섯째, 연좌제에 근거한 보복을 종식하고 유죄판결 받는 자들의 가족들을 강제이주시키는 관행을 즉각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다.²¹³⁾ 또한 사형의 부과 및 집행

211) 미국의소리<www.voakorea.com>, “유엔 북한인권결의 초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명시”(보도일: 2014. 10. 3).

21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이행할 것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²¹⁴⁾

그러나 북한은 형사법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2차 UPR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게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간결한 정의, 형법상의 연좌제 폐지,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중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을 촉구하였는데 북한은 이와 같은 권고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였다.²¹⁵⁾ 한편, 북한은 자국에 대한 2차 UPR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재판소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어떠한 기관도 재판소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긴 몇 차례의 지침을 최고재판소가 하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²¹⁶⁾ 북한이 이 같이 2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재판소 독립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 독립은 북한 헌법 제166조와 제271조에 명목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규정과 달리 북한 재판소는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²¹⁷⁾

북한은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인권보고서 발표를 통해 자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즉, 북한은 형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²¹⁸⁾ 또한 검찰소와 재판소는 북한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고 한다.²¹⁹⁾ 나아가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고문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인간의 자주성을 빼앗는 노예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한다.²²⁰⁾ 또한 재판소의 독립을 강조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²²¹⁾

213) COI 보고서, 제89항(c): COI 상세보고서, 제1220항(c).

214) COI 보고서, 제89항(d): COI 상세보고서, 제1220항(d).

215) 2차 UPR 인권이사회 보고서, 제125항.

216) 2차 UPR 북한보고서, 제35항-제36항.

217)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19쪽.

218)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33쪽.

219)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 보고서, 40쪽.

220)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 보고서, 52-55쪽.

221) 조선인권연구협회, 위의 보고서, 55-56쪽.

5. 재판 없는 형벌 부과 및 집행 지속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재판, 동지심판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 등 정규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유사재판제도가 있다. 북한의 유사재판제도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²²²⁾ 또한 북한에는 노동단련이라는 제재가 있는데 노동단련은 재판 없이 부과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도입하였는데 노동단련형은 재판을 통해 부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는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노동단련형과 재판 없이 부과되는 노동단련이 형벌로서 병존하고 있다. 노동단련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다.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노동단련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²²³⁾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반한다.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²²⁴⁾은 모든 사람이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며,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4조 제1항). 북한 스스로 공식 발표한 문헌에서 북한의 모든 사람은 범죄혐의를 결정할 경우 법에 의하여 조직된 권한 있고 독자적인 재판소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²²⁵⁾

아래에서는 유사재판 가운데 국가안전보위부가 실시한 장성택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수용도 재판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범수용소 수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본다.

222) 북한의 유사재판제도에 대해서는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99쪽 이하.

223)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134쪽.

224)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다.

225)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55쪽.

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모든 칭호를 박탈하였다. 이어 같은 달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진행하여 장성택에게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다.

장성택에게 실시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특별형사재판 가운데 하나인 군사재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재판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재판소구성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재판의 일종인 군사재판도 북한 재판소구성법의 적용을 받는다. 북한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정규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2011년 12월 21일 재판소구성법 제3조, 제9조). 그러나 장성택 처형의 경우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볼 때 정규재판조직에 의한 재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사재판이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사재판은 정규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의 경우 사형 판결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은 군사재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재판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2012년 5월 14일 형사소송법 제53조), 사형 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제359조), 이 기간이 지나야 형이 확정되어(제362조) 집행할 수 있는데(제418조) 장성택 처형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장성택 처형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형사재판의 일종인 군사재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재판으로 보인다. 북한이 관행상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정치범 재판을 실시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²²⁶⁾

226)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재판에 대해서는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99쪽 이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실시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은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은 1974년 4월 14일 제정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하였다. 2013년 6월의 이 개정으로 우선 명칭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은에 대한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²²⁷⁾ 장성택 처형은 10대원칙의 핵심인 유일영도체계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단행되었다. 다시 말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가 개최된 이유는 장성택이 “...(노동)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였기 때문이었다.²²⁸⁾ 2014년 북한 신년사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종파오물’을 제거했다며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 강화 강조, 군인들을 상대로 한 수령보위 및 제도보위 강화를 강조하였다.²²⁹⁾ 이후 북한은 2014년 2월 25일 10년 만에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²³⁰⁾ 이는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과 유사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09년~2010년경부터 회령 22호 관리소의 이전을 시작하여 2012년 5월경까지 수감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관하고 폐쇄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창 18호 관리소는 2006년~2007년경 개천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5곳에 80,000명~12,000명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¹⁾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곳으로 공민권,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가족권, 교육권, 근로권 등의 각종 인권 침

2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창, “김정은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 특징과 향후 전망,” 19쪽 이하.

228)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29)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227쪽 이하.

230)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나날이 심해지는 북한 김정은의 사상통제”(보도일: 2015. 5. 19).

231)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통일연구원, 2013, 20쪽 이하, 29쪽 이하.

해가 발생하고 있다.²³²⁾ 이 같은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다.²³³⁾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체포와 구금은 철저히 금지된다.²³⁴⁾ 이 같은 점에 미루어볼 때 정치범수용소 운영 규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치범과 일반범의 구별 기준, 정치범수용소 수용 절차 등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공개된 적은 없다.²³⁵⁾ 만일 이 같은 법적 근거 없이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면 자의적인 운영으로서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절 형법의 변화와 지속

북한은 2009년 10월 19일 형법을 수정보충한 후 2010년 10월 1일, 2011년 6월 7일, 2012년 4월 24일, 같은 해 5월 24일 형법을 각각 수정보충하였다. 그런데 2010년 10월 1일, 2011년 6월 7일, 2012년 4월 24일 수정보충된 내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09년 10월 19일 형법(이하 “구 형법”)과 2012년 5월 14일 형법(이하 “현행 형법”)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형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편, 북한전문 언론매체에 의하면 북한은 2014년 초 형법 제60조를 개정하여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통화 적발 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다섯 가지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한다.²³⁶⁾ 그러나 개정 사실 여부와 개정된 조항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232) 이금순·김수암·이규창, 위의 책, 37쪽 이하.

233) 이금순·김수암·이규창, 위의 책, 83쪽.

234)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55쪽.

235)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24쪽.

236)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北당국, 국가전복음모죄에 ‘남과 불법통화 처벌’ 추가”(보도일: 2014. 5. 20).

1. 형법총론 분야

가. 형법의 목적 및 계급적 원칙

북한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 형법의 임무는 김정은 체제 하의 현행 형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현행 형법 제 1조). 북한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점들이 확인된다. 한 북한 학자는 노동당을 정치적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검찰·재판기관의 매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당의 정책집행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²³⁷⁾ 다른 학자는 북한 형법의 적용목적이 일반범죄자들의 교양개조와 경고와 자극을 통한 범죄예방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반국가범죄자들이 더 반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한다.²³⁸⁾ 형사책임도 범죄자가 피해를 준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북한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앞에 지는 책임이라고 한다.²³⁹⁾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과 북한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재판소의 권력적 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강조한다.²⁴⁰⁾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계급적원수들의 책동과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위보위하는 것은 통일적인 과정으로 수행되는 공화국재판의 본질적내용의 두 측면이며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것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 수령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것이다.”

한편, 현행 형법은 범죄자의 처리 원칙에서 계급적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제3조). 이 규정은 구 형법(제2조)과 동일하다. 이 같은 계급적

237) 장성철,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검찰, 재판기관의 중요과업”, 정치법률연구, 2007년 제2호, 29쪽.

238)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33쪽 이하.

239) 리정준, “형사책임의 특징”,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34쪽.

240) 문병갑, “공화국재판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4호, 41쪽.

원칙 고수는 북한 학자의 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검찰기관 및 재판기관들이 형사사건 취급처리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계급적 원칙의 철저한 고수가 첫째, 당과 혁명,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때문이며 둘째, 온갖 위법현상과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되기 때문이고 셋째, 경제 분야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끌어들이려는 무규율적인 현상들을 타파하고 당의 경제 건설노선 및 경제정책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¹⁾

나. 형사책임

구 형법과 비교할 때 현행 형법은 첫째,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조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벌성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단순화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 요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 제10조가 범죄를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회적 위험성이 있어야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보안성이 법투쟁 일군을 위해 작성한 실무지침서는 사회적 위험성, 위법성, 죄책성, 가벌성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범죄가 된다고 한다.²⁴²⁾

둘째,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던 것을 피해자의 인신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재산 침해의 경우를 제외하였다. 현행 형법 제18조는 피해자의 인신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벌성이 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있다는 점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학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는 인신상 손해, 정신적 손해와 더

241) 조병천, “형사사건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선국시대 검찰, 재판기관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6권 제4호, 2010, 108-109쪽.

242)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73쪽.

불어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한다.²⁴³⁾

셋째, 가족 또는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 고의적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고의적중상해죄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던 것을 고의적중상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공범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개정하여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표 4-2〉 북한 형법상의 범죄 일반규정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 고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제14조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4조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사회적 위험성 문구 삭제
피해자 요구에 따른 가해자의 형사책임	제17조 (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8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목 수정 재산 침해 삭제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조 (생략) 고의적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고의적중상해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생략) 고의적중상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범죄 확대
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제22조 (생략)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제22조 (생략)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처벌한다는 규정 삭제

243) 리문성,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31쪽 이하.

다. 형벌(형사제재)

형벌에 있어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현행 형법은 형벌에 있어 선거권박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산몰수형은 사형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대신 제33조에 벌금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북한은 2009년 10월 19일 형법 개정 시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신설하였는데 2012년 5월 14일 개정 시 벌금형을 설명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제3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단련형 기간을 종전 6개월부터 2년까지에서 6개월부터 1년까지로 개정하고, 구속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던 것을 1일로 개정하였다. 구 형법에 따르면 구금 시설 1년부터 2년까지의 수감에 대해서는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 가운데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6개월부터 1년은 노동단련형, 1년 이상은 유기노동교화형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형법 개정을 통해 노동단련형이 형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형법 개정으로 2년제 노동단련형이 없어지고 1년제 노동단련형으로 변화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⁴⁴⁾

셋째, 선거권박탈형 기간을 5년 이하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²⁴⁵⁾

넷째, 재산몰수형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국가에 이전하는 형벌임을 명시하였다. 현행 북한 형법 제34조에 따르면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로 정의되어 있는데, 북한 학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란 사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재산몰수형은 일반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가운데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파괴암해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형에 부가하여 선고될 수 있다고 한다.²⁴⁶⁾

244)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131쪽.

245) 럽정철,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선거권박탈형에 대한 과학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3호, 41쪽.

다섯째, 재산몰수형을 취소할 경우 현물로 재산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응하는 비용을 돌려준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자격박탈형의 경우 구 형법은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던 것을 현행 형법은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일곱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 형법상의 형벌을 ‘한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함으로써 형벌 집행을 강조하던 것을 ‘형벌이다’고 개정하여 형벌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표 4-3〉 북한 형법상의 형벌 규정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 고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산몰수형은 사형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삭제
사형	제29조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생략)	제29조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생략)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생략)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생략)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로동단련형	제31조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중략)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31조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중략)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최대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구속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2일에서 1일로 변경

246) 럽정철,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재산몰수형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36쪽.

	구 형법	현행 형법	비 고
선거권 박탈형	제32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중략)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2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중략)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5년 이하에서 5년으로 변경
벌금형		제33조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재채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신설
재산 몰수형	제33조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생략)	제34조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생략)	무상 명시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재산몰수형 취소	제34조 (생략)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준다.	제35조 (생략)	규정 삭제
자격 박탈형	제36조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생략)	제37조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생략)	영구 박탈 명시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자격 정지형	제37조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생략)	제38조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생략)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라. 양형

첫째, 형벌양정 시 무겁게 보는 조건에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보호 하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삭제하였다.

둘째, 형벌양정 시 가볍게 보는 조건에서는 구 형법상의 ‘처음으로 한 범죄를 저

질렀을 경우’를 삭제하고 대신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특출한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개정하고,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표 4-4〉 북한 형법상의 양형 규정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제39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0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모한 경우 제외 삭제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제40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1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 특출한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0.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중전 규정 삭제하고 새롭게 규정 문구 수정 신설

마. 형벌의 면제

첫째,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 형벌을 양정한다는 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둘째, 집행유예 적용조건을 종전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3년 이하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3년이상 5년까지 노동교화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셋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에 있어 사회적 교양처분과 마찬가지로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 양형하여 형벌에 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넷째, 특사의 실시권자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북한 헌법과의 조화를 위해서인데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 개

정 시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면서 특사권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2년 4월 13일 헌법 개정 시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도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도로 변경하였다.

다섯째, 만기전석방의 조건을 개정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의 경우 15년이 경과한 후 형벌 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을 10년으로 단축하였다.

여섯째,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3년까지 노동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와 3년이상 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구분하여 각각 5년과 8년을 형사소추 시효기간으로 규정하였다.

〈표 4-5〉 북한 형법상의 형벌의 면제 규정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사회적 교양처분의 법률적 효과	제50조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양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1조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양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한 규정 추가 숨긴 범죄 추가
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제51조 5년까지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노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3년까지 노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이상 5년까지 노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제52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노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적용조건 변경 삭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	제52조 (생략)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3조 (생략)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에 합한다.	숨긴 범죄 추가

	구 형법	현행 형법	
특사	제53조 (생략)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생략)	제54조 (생략)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생략)	실시권자 변경
만기전 석방	제54조 (생략)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55조 (생략) 무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완전히 교양개조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조건 변경 15년 경과 후에서 10년 경과 후로 변경
형사소추시 효기간	제56조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생략)	제57조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년 2.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3.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생략)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과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으로 구분

2. 형법각론 분야

구 형법과 현행 형법상의 범죄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기(刑期)를 단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⁴⁷⁾ 이는 그 동안 북한이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전면 개정하여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 해석 허용 조문 삭제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16개 조문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구

247) 노동단련형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 조항(제31)에 따라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도 모두 노동단련형 2년을 1년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형기 단축에서는 제외하였다.

정하였고, 2009년 4월 28일 개정을 통해서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처벌유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²⁴⁸⁾ 그리고 2009년 10월 19일 개정 시에는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적용하였다(제27조, 제28조).

북한이 이와 같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벌을 완화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기대감 부여를 통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5월 14일 형법 개정에 즈음하여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와 국경통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²⁴⁹⁾ 반면에 북한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기를 연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거나 일부 범죄는 규정에서 삭제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분야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2012년 5월 14일 형법 개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이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있어서는 민족반역죄가 종전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서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 외에 다른 범죄들은 변화가 없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표 4-6〉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67조(민족반역죄)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	제68조(민족반역죄) 5년이상의 노동교화형	형기 단축

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명령·결정·지시집행태만죄를 비롯하여 16개 범

248)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16쪽 이하.

249)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北 주민·국경통제 대폭 완화…유화정책 선회?”(보도일: 2012. 2. 15).

죄의 형기를 단축하였다. 형기를 연장한 범죄는 없다. 신설되거나 폐지된 범죄도 없다. 구 형법상의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 약취 및 비법휴대·양도죄가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 약취죄와 무기·탄약 비법휴대·양도죄로 구분되었다.

〈표 4-7〉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73조(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여러 번 한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74조(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여러 번 한 경우: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74조(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75조(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78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약취 및 비법휴대, 양도죄) 전투기술기재를 약취하였거나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무기, 탄약을 약취하였거나 대량의 전투기술기재를 약취한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무기, 탄약을 대량약취하였거나 전투기술기재를 특히 대량약취한 경우: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76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약취죄) 여러 번 또는 대량의 전투기술기재를 약취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77조(무기, 탄약 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범죄 분리 형기 단축 동일
제75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78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76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79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규정 없음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처벌 완화 낮은 형벌 형기 단축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77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상 7년이하의 로 동교화형	제80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85조(군사임무수행방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1조(군사임무수행방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79조(군수품 잃어버린죄) 많은 군수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2조(군수품분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변경 형기 단축
제87조(군수품을 팔고산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3조(군수품매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80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4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81조(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5조(군수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 산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 화형	제목 변경 형기 단축
제82조(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6조(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 화형	형기 단축
제83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전시 또는 준전시의 경우: 5년이하의 로동 교화형	제87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전시 또는 준전시의 경우: 3년이하의 로동 교화형	형기 단축
제84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8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86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89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88조(국방비밀루설죄) 여러번 또는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하였 거나 국방비밀문서를 잃어버린 경우: 5년이 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 화형	제90조(국방비밀루설죄)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국방비밀 문서 분실 행위 제외 형기 단축

다.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는 북한 형법에서 가장 많은 조문 수를 구성하고 있
다. 북한 형법상의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및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서는 국가재산훔친죄를 비롯하여 8개 범죄의 형기를 단축하였다. 형기를 연장하거나 신설한 범죄는 없다. 구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재산공갈죄(구 형법 제91조)는 폐지되었다.

〈표 4-8〉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89조(국가재산훔친죄)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 2년이상 9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 9년이상 노동교화형	제91조(국가재산훔친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 4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 4년이상 9년이하의 노동교화형	공모한 경우 제외 형기 단축
제90조(국가재산빼앗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 10년이상 노동교화형	제92조(국가재산빼앗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 6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 6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완화 형기 단축
제91조(국가재산공갈죄)	규정 없음	폐지
제92조(국가재산속여가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 2년이상 8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 8년이상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국가재산속여가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완화
제93조(국가재산횡령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 3년이상 9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 9년이상 노동교화형	제94조(국가재산횡령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완화 공모한 경우 제외 형기 단축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9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락취죄) 무기로동교화형	제9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락취죄)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95조(국가재산강도죄)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96조(국가재산강도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형기 단축
제97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99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대량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무기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제98조(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0조(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둘째,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를 비롯하여 43개 범죄의 형기가 단축되었다. 반면 대량의 유가증권 위조 범죄와 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설비점검·보수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위반죄의 경우는 처벌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대부질서위반죄, 화폐교환질서위반죄, 외화사용질서위반죄, 비법적인 영업죄, 무역 및 외화벌이 기관·단체의 상적행위, 마약·독약·폭발물의 보관·공급질서위반죄, 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는 신설되었다. 구 형법의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 보관·공급질서위반죄, 노력착취죄,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건설죄, 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 국가건물구조변경,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 생산물 비법처분죄, 전화설치위반 및 사용을 방해한 죄는 폐지되었다.

〈표 4-9〉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99조(화폐위조죄) 공화국화폐와 공화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를 위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101조(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범죄 병합 형기 단축
제100조(위조화폐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1조(증권위조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2조(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유가증권 위조 또는 대량의 위조증권 사용: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대량의 유가증권 위조 또는 특히 대량의 위조증권 사용: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범죄 병합 위조 형기단축 사용 형기 연장
제102조(위조증권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처벌 완화 형기 단축
규정 없음	제104조(대부질서위반죄)	규정 신설
제104조(외국화폐매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6조(화폐매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05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07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06조(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	규정 없음	폐지
제107조(마약, 폭약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규정 없음	폐지
규정 없음	제108조(외화사용질서위반죄)	규정 신설
제109조(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10조(국가납부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10조(개인의 상적행위죄)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11조(암거래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형기 단축

구 형법	현행 형법	비 고
제114조(거간죄)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12조(거간죄)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18조(고리대죄) 고리대를 한자 대량이상의 리득을 얻은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13조(고리대죄) 고리대를 상습적으로 한자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구성요건 강화 형기 단축
규정 없음	제114조(비법적인 영업죄)	규정 신설
규정 없음	제115조(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	규정 신설
제112조(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자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16조(법인행세죄)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구성요건 강화 처벌 완화
제113조(특허,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권 침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17조(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15조(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 밀수, 밀매: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118조(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 밀수, 밀매: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16조(밀수죄)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밀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119조(밀수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밀수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17조(수출입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출입질서를 어긴 경우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0조(수출입질서위반죄)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거나 지시한 경우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구성요건 변경 형기 단축
제124조(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죄)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1조(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산적 손실을 준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형기 연장

134 •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26조(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 죄)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2조(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20조(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3조(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19조 (로력착취죄)	규정 없음	폐지
제121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124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시켰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제122조(운수수단리용질서위반죄)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5조(화차, 짐배리용질서위반죄)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형기 단축
제127조(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7조(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범죄 병합 처벌 완화
제128조(인민경제계획을 고친죄)		
제129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30조(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죄) 거짓보고를 여러번 하였거나 거짓보고로 국가의 정책작성과 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31조(계약규률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8조(계약규률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32조(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규정 없음	폐지
제133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29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규정 없음	제130조(마약, 독약, 폭발물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규정 신설

구 형법	현행 형법	비 고
제134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1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35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끈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끈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 5년 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2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 로 꾸어준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특히 대량의 손 실을 준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처벌 완화
제136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 비, 사장죄)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하였 거나 사장시켜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 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 손실을 준 행위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온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3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죄)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 하여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 손실을 준 행위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온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처벌 완화
제137조(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 패변질, 류실시킨 경우: 4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4조(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목 변경 형기 단축
제138조(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5조(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 처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39조(재산을 랑취하여 기관에 넘겨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6조(재산을 랑취하여 기관에 넘겨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40조(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	규정 없음	폐지
제141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 3년이하의 노동 교화형	제137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42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38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형기 단축
규정 없음	제139조(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	규정 신설
제143조(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죄) 특히 중요한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 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 화형	제140조(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목 변경 형기 연장
제144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41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형기 단축

136 •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규정 없음	제142조(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규정 신설
제145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 죄)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주게 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43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변경 형기 단축
제146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 죄) 건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주게 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44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변경 형기 단축
제163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45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47조(국가건물구조변경죄)	규정 없음	폐지
제148조(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죄)	규정 없음	폐지
제150조(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47조(농업생산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범죄 병합 처벌 완화
제151조(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 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2조(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3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 2년이하 로동교화형	제148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56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1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57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2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형기 단축
제158조(량정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3조(량정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61조(생산물의 비법처분죄)	규정 없음	폐지
제164조(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6(전력공급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65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7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166조(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8조(체신사업질서위반죄)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67조(전화설치위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규정 없음	폐지
제168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59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연장
제170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61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셋째,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경우에는 지하자원개발·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를 비롯하여 10개 범죄의 형기가 단축되었다. 신설되거나 폐지된 범죄는 없으며 형기가 연장된 범죄도 없다.

〈표 4-10〉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73조 (토지람용, 폐경죄) 비법적으로 많은 면적의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행위	제164조 (토지리용질서위반죄) 토지리용질서 위반 행위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제174조 (토지류실죄)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토지를 류실시킨자	제165조 (토지보호질서위반죄) 토지보호질서를 위반하여 토지를 류실시킨 행위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제175조 (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66조 (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76조 (비법적인 광석채취, 제련죄) 비법적으로 광석을 채취, 제련한 행위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67조 (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개인이 광석을 채취, 제련한 행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및 구성요건 변경 형기 단축
제177조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68조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78조 (산림람도벌죄)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람도벌한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69조 (산림람도벌죄)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람도벌한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79조 (과실산불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0조 (과실적산불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82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3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83조 (하천관리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4조 (하천보호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184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5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넷째,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경우에는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를 비롯하여 3개 범죄의 형기가 단축되었다. 보호 법익에 재산적 손실이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북한에서 재산 개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형기가 연장된 범죄는 없으며, 신설된 범죄도 없다. 구 형법상의 노력배치·조절·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는 폐지되었다.

〈표 4-11〉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85조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죄)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6조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죄)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재산적 손실 명시 형기 단축
제186조 (노동안전질서위반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7조 (노동안전질서위반죄)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재산적 손실 명시 처벌 완화
제187조 (교통사고죄)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79조 (교통사고죄)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재산적 손실과 도주한 경우 명시 처벌 완화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88조 (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	규정 없음	폐지

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서는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를 비롯하여 17개 범죄의 형기를 단축하였다. 구 형법상의 교육강령·과장안을 무책임하게 한 죄를 폐지하였다. 한편, 마약 밀수·밀매죄에 있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북한에 만연해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마약 밀수·밀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⁵⁰⁾

아울러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북한은 구 형법상의 역사유적·유물·명승지·천연기념물파손죄를 역사유적·유물·명승지·천연기념물 고의적파손죄와 역사유적·유물·명승지·천연기념물 과실적파손죄로 구분하였고, 역사유물밀수·밀매죄에 국보역사유물 밀수·밀매 행위와 준국보역사유물을 여러번 밀수·밀매한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 명시하였다.

치료거부죄의 신설도 주목된다. 북한에서 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치료거부죄의 신설을 통해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방지 내지 감소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9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성록화물을 반입하였거나 보관, 류포한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성록화물을 반입하였거나 보관, 류포한 경우: 규정 없음	성인물에 대한 처벌 완화

250)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106쪽 이하.

140 •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19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96조(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행위: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86조(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고의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행위: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범죄 구분
	제187조(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과실적파손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형기 단축
제197조(역사유적도굴죄) 여러번 한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88조(역사유적도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198조(역사유물밀수, 밀매죄) 역사유물 밀수, 밀매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위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 동교화형	제189조(역사유물밀수, 밀매죄) 국보역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역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위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국보역사 유물, 준국보역사 유물 명시 처벌 완화
제199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무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0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무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00조(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1조(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02조(정보파손죄)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행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3조(정보파손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03조(허위정보입력, 류포죄)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4조(허위정보입력, 류포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낮은 형벌
제204조(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죄)	규정 없음	폐지
제205조(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5조(후비양성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206조(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6조(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07조(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보호관리질서를 어겨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7조(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보호관리질서를 어겨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 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어린이 사망 명시 형기 단축
제209조(의료사고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198조(의료사고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규정 없음	제199조(치료거부죄)	규정 신설
제215조(가짜의약품, 식품제조, 판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202조(가짜의약품, 식품제조, 판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13조(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04조(국경검역사업태만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14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205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형기단축 처벌완화
제21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행위: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행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제목 변경 독성물질 명시 낮은 형벌
제217조(비법마약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08조(비법마약사용죄)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형기 연장 형벌 강화 최고 사형

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북한 형법상의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직무상범죄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경우 집단적소동죄를 비롯하여 13개 범죄의 형기가 단축되었다. 처벌이 강화된 범죄는 보이지 않는다. 구 형법상의 벌일근 직무집행방해죄, 증명서매매죄, 항해·어로구역 이탈죄는 폐지되었고, 독립임무수행태만죄와 담보처분한 재산 비법처분죄가 신설되었다.

〈표 4-13〉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19조(집단적소동죄) 반국가목적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 자: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주모자와 주동분자: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209조(집단적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주동분자: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재산파괴 명시 형기 단축
제221조(법일근의 직무집행방해죄)	규정 없음	폐지
제222조(허위풍설날조, 류포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11조(허위풍설날조, 류포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23조(공인, 직인의 비법사용, 위조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12조(공인 비법사용, 위조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직인 사용 제외 처벌 완화
제225조(증명서매매죄)	규정 없음	폐지
제226조(출판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14조(출판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27조(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216조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28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17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규정 없음	제218조(독립임무수행태만죄)	규정 신설
제230조(고의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의 고의적 루설: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 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5년이상	제219조(고의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 고의적 루설: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5년	낮은 형벌 형기 단축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1조(과실적비밀루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20조(과실적비밀루설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34조(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행위 여러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22조(비법협조죄)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자를 비법적으로 도와주는 행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변경 구성요건 변경 형기 단축
제235조(항해, 어로구역 리탈죄)	규정 없음	폐지
제236조(거짓신고, 진술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38조(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 행위: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26조(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 행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목 변경 낮은 형벌 형기 단축
제241조(도주죄)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29조(도주죄)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43조(봉인손상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1조(봉인손상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규정 없음	제232조(담보처분한 재산 비법처분, 리용죄)	규정 신설

둘째, 직무상 범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를 비롯하여 9개 범죄의 형기가 단축되었다. 반면 직무태만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구 형법상의 관리일군뇌물죄는 폐지되었다. 북한이 관리일군의 뇌물죄를 폐지한 이유는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 법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⁵¹⁾

251)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249쪽.

〈표 4-14〉 직무상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 고
제246조(직권람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5조(직권람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47조(월권행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6조(월권행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48조(직무태만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7조(직무태만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연장
제249조(물질적부담을 시킨죄) 여러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부담시킨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8조(물질적부담을 시킨죄) 여러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부담시킨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50조(신소, 청원묵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39조(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제251조(국가기관권위훼손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51조(국가기관권위훼손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52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여러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41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여러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53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242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형기 단축
제254조(비법석방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43조(비법석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55조(부당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44조(부당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제257조(관리일군뢰물죄)	규정 없음	폐지

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미성년범죄추진죄를 비롯하여 8개 범죄의 처벌을 완화하였다. 반면 매음죄와 실력행사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는 북한에 매음과 실력행사(자력구제)가 빈번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 형법상의 미신행위조장죄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북한 미신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법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형법은 양로사업질서위반죄와 학대괄시죄,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를 신설하였다. 양로사업질서위반죄와 학대괄시죄를 신설한 이유는 연로자(노인)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의 신설은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로사업질서위반죄는 양로(養老)사업을 하지 않는 행위를(제259조), 학대괄시죄는 자기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260조).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는 공무원이 거래과정에서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262조). 북한 학자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첫째, 사회적 집단의 단결을 해치며 둘째,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산생시키고 셋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독성이 있다고 한다.²⁵²⁾

〈표 4-15〉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60조 (미성년범죄추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48조 (미성년범죄추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61조 (매음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49조 (매음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연장
제262조 (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번 하였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50조 (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252) 리광일,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그 해독상”,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 38쪽.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63조 (직권참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51조 (직권참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69조 (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회복한자: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	제253조 (실력행사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형벌 강화
제266조 (도박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55조 (도박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67조 (미신행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56조 (미신행위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68조 (미신행위조장죄)	규정 없음	폐지
제271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58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규정 없음	제259조 (양로사업질서위반죄)	규정 신설
규정 없음	제260조 (학대말시죄)	규정 신설
규정 없음	제262조 (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규정 신설
제275조 (락취물건거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63조 (락취물건거래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76조 (묘파손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상 4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76조 (묘파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처벌 완화

사.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북한 형법상의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는 크게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와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로 구분되어 있다.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는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를 비롯하여 13개 범죄의 처벌이 완화되었다. 반면 강간죄는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거나 신설된 범죄는 없다. 북한은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는 자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한다.²⁵³⁾

253) 인민보안성, 법무장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436쪽.

〈표 4-16〉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80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 3년이상 6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6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68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81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69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낮은 형벌
제282조 (과실적 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0조 (과실적 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 1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제283조 (고의적중상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271조 (고의적중상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84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2년이상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2조 (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제286조 (과실적 중상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3조 (과실적 중상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87조 (고의적 경상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4조 (고의적 경상해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88조 (폭행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5조 (폭행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91조 (비법자유구속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6조 (비법자유구속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89조 (어린이 훔친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77조 (어린이 훔친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낮은 형벌
제290조 (유괴죄)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278조 (유괴죄)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처벌 완화
제293조 (강간죄) 녀성을 강간한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른간한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제279조 (강간죄) 녀성을 른간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 명시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80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형기 단축
제295조 (미성인성교죄)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81 (미성인성교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여러번 성교한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재산훔친죄를 비롯하여 6개 범죄의 처벌이 완화되었다. 처벌이 강화된 범죄는 없다. 구 형법상의 개인재산공갈죄는 폐지되었으며, 신설된 범죄는 없다. 법투쟁 일군을 위한 실무지침서는 북한 주민들의 개인 소유를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 형법의 인민적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과업의 하나라고 한다.²⁵⁴⁾

〈표 4-17〉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개정 조항 비교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96조(개인재산훔친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 행위: 최대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 7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83조(개인재산훔친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형기 단축
제297조(개인재산빼앗은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 최대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 8년이상 1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84조(개인재산빼앗은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형기 단축

254)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475쪽.

구 형법	현행 형법	비고
제299조(개인재산속여가진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행위: 최대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85조(개인재산속여가진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행위: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 2 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형기 단축
제300조(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 최대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 우: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 7년이 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제286조(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 1년이하의 로 동단련형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 4년이하 의 로동교화형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 4년 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	낮은 형벌 형기 단축 형기 단축
제301조(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락취죄) 개인재산락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287조(개인재산대량락취죄) 락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 4년이하의 로동 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제목 변경 형기 단축 처벌 완화
제302조(개인재산 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 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행위: 5년이하 의 로동교화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 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한 경우: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제288조(개인재산 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 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행위: 4 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 도한 경우: 4년 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규정 없음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9년이상의 로동 교화형	형기 단축 형기 단축 처벌 완화 낮은 형벌
제298조(개인재산공갈죄)	규정 없음	폐지

제3절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상의 변화와 지속

북한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피의자)와 피소자(피고인)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을 통해 판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와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법 자체의 문제점 및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²⁵⁵⁾ 이 같은 문제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⁶⁾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의 절반가량이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와 인민보안부(구 사회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와 같은 조사 및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약 90%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4-18〉 북한인권 침해사건 발생 장소²⁵⁷⁾

년도	장소	조사·구류 시설	집결소	노동 단련대	노동 교화소	피해자 집	정치범 수용소	공공 장소	피해자 일터
2012		23.4%	6.7%	6.5%	6.2%	9.9%	8.2%	6.0%	2.3%
2013		23.1%	6.7%	6.5%	6.2%	9.4%	8.2%	5.7%	2.3%
2014		22.9%	6.7%	6.5%	6.3%	9.0%	8.2%	5.6%	2.2%

아래에서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분석을 통해 형사소송법 분야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6년 10월 18일 수정보충된 이후 2011년 10월 19일과 2012년 5월 14일 각각 수정보충되었다. 그런데 2011년 10월 19일 수정보충된 내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2006년 10월 18일 형사소송법(이하 “구 형소법”)과 2012년 5월 14일 형사소송법(이하 “현행 형

255) 대표적으로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한올아카데미, 2008, 28쪽 이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인권재단, 2012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12, 108쪽 이하, 140쪽 이하 참조.

256)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33쪽.

257)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인권백서, 2012, 58쪽 이하;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북한인권백서, 2013, 55쪽 이하; 북한인권정보센터, 2014 북한인권백서, 2014, 55쪽 이하를 재정리하여 작성.

소법”) 규정을 비교한다. 한편, 북한 판결판정집행법은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된 이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어 북한 학자들의 글과 최근 발생한 사건 분석을 통해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 분야의 최근 동향과 실태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개정의 특징

가. 증거와 관할 및 변호의 중요성 인식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 형소법에는 별도의 장으로 되어 있던 증거와 변호, 관할을 모두 일반규정에 편입시켰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규정들 앞에 위치시켰다. 이는 북한이 형사소송에 있어 증거와 변호, 관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진다.

〈표 4-19〉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체계 비교

구 형소법	현행 형소법
제2장 일반규정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자	제2절 증거
제3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3절 관할
제4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4절 변호
제5절 형사소송의 중지	제5절 형사소송문건
제6절 형사사건의 기각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제7절 사회적 교양처분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8절 손해보상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9절 형사소송문건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
제10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제10절 사회적 교양처분
제3장 증거	제11절 손해보상
제4장 변호	
제5장 관할	

첫째, 증거에 있어 증거물을 반환하거나 이관할 경우의 절차를 강화하였다. 구 형소법이 증거물을 반환하거나 이관할 경우 수사원, 예심원이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던 것을(구 형소법 제104조), 판사가 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현행 형소법 제43조).

둘째, 관할에 있어서는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될 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관할의 일반규정을 신설하였다(현행 형소법 제45조). 군수재판제도의 도입과 군사재판의 심급 변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표 4-1 참조).

셋째, 변호에 있어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된 경우 구 형소법은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던 것을(구 형소법 제111조), 현행 형소법은 판사가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현행 형소법 제63조). 그러나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기를 예심을 종결한 다음에서(구 형소법 제118조),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으로 개정하여(현행 형소법 제70조)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권을 제한하였다.

나. 기간 조정

첫째, 기간이 연장된 규정들이 다수 있다. 먼저, 예심기간의 연장이 개정되었다. 구 형소법은 복잡한 범죄사건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152조). 이에 비해 현행 형소법은 복잡한 범죄사건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로 규정하여 기간을 연장하였다(구 형소법 제151조). 또한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구 형소법 제188조 제2항), 2개월로 개정하였다(현행 형소법 제187조 제2항). 기소 기간도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기소기간이 10일 이내였으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이 가능하게 규정되었다.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종전 기소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연장되었다(구 형소법 제262조, 현행 형소법 제261조). 기소를 위한 피심자 구류기간도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10일까지였으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간 연장이 가능하게 규정되었다.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피심자 구류기간은 종전 3일에서 5일로 연장되었다(구 형소법 제263조, 현행 형소법 제262조).

제1심 재판기간이 연장되었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287조, 현행 형소법 제286조).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5일 전으로 기간을 연장하였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 3일 전에 판정서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5일 전으로 기간을 연장하였다(구 형소법 제298조, 현행 형소법 제297조). 재판조서 작성기간도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개정되었다(구 형소법 제355조 제1항, 현행 형소법 제354조 제1항).

재심신청 처리 기간도 종전에는 북한 주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재심신청을 할 경우 검사는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410조, 현행 형소법 제409조). 이와 같이 예심, 기소, 재판기간, 구류기간을 연장한 것은 복잡한 범죄 사건과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일부 절차에 있어 기간이 축소되었다. 구 형소법은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구 형소법 제152조) 5일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간을 단축하였다(구 형소법 제151조). 또한 피심자 구류기간에 있어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은 그 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구 형소법 제188조 제3항), 5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현행 형소법 제187조 제3항). 제1심 재판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피소자의 구류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축소되었다(구 형소법 제282조, 현행 형소법 제281조). 제2심 재판기간에 있어 노동단련형 사건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단련형 사건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형소법 제366조, 현행 형소법 제365조). 또한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경우에도 노동단련형 사건의 경우에는 2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구 형소법 제368조, 현행 형소법 제367조). 이는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소기간을 축소하였다. 상소시간이 10일 이내라는 점은 구 형소법과 현행 형소법이 동일하나, 현행 형소법은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는 3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구 형소법 제361조, 현행 형소법 제359조).

검사의 항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었다(구 형소법 제362조, 현행 형소법 제 360조).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을 항의라고 한다. 노동단련형 사건의 경우 상소기간을 축소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속한 처리가 개정의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20〉 북한 형사소송법의 기간 비교

구분	구 형소법	현행 형소법	비고
예심기간 연장	복잡한 사건: 4개월 노동단련형 사건: 1개월	복잡한 사건: 5개월 노동단련형 사건: 5일	기간 연장 기간 단축
피심자 구류기간 연장	특pecially 복잡한 범죄사건: 1개월 노동단련형 사건: 1개월	특pecially 복잡한 범죄사건: 2개월 노동단련형 사건: 5일	기간 연장 기간 단축
기소기간	10일 노동단련형 사건: 3일	10일. 특별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 5일 연장 가능 노동단련형 사건: 5일	기간 연장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10일. 노동단련형 사건: 3일	10일. 특별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 5일 연장 가능 노동단련형 사건: 5일	기간 연장
제1심 재판 피소자 구류기간	노동단련형 사건: 15일	노동단련형 사건: 10일	기간 단축
제1심 재판기간	25일. 특별이 복잡한 범죄사건: 5일 연장 가능 노동단련형 사건: 10일	25일. 특별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 10일 연장 가능 노동단련형 사건: 10일	기간 연장 동일
기소장 및 판정서등본 송달	3일전	5일전	기간 연장
재판심리일자 통지	재판심리 시작 3일전	재판심리 시작 5일전	기간 연장
재판조서 작성기간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	재판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기간 연장
상소·항의 기간	판결서·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판결서·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는 3일 이내	상소기간 제한
제2심 재판기간	상소·항의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상소·항의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노동단련형사건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기간 단축
검사의 사건기록 검토기간	10일	10일. 노동단련형 사건은 2일	기간 단축
재판신청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기간 연장

다. 판결판정 집행 절차 구체화

첫째, 판결·판정이 확정된 후 집행문건의 송부 기간에 대해 구 형소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비해 현행 형소법은 ‘2일 이내’에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형소법 제420조, 현행 형소법 제419조). 둘째, 벌금형 집행 규정이 신설되었다. 벌금형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구 형소법 제426조, 현행 형소법 제425조 제2항). 셋째, 재산몰수형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구 형소법 제428조, 현행 형소법 제427조 제3항). 넷째,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구 형소법 제429조, 현행 형소법 제428조). 다섯째, 구 형소법은 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과 만기 전 석방의 심리 해결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현행 형소법은 ‘1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형소법 제435조, 현행 형소법 제433조). 여섯째, 구 형소법에 없는 형벌집행중지를 받은 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현행 형소법 제434조).

한편, 사형 집행에 있어 구 형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419조). 이에 비해 현행 형소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형소법 제418조). 해당 기관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형집행지휘문건 발급 기관이 해당 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로 개정되었다(구 형소법 제422조, 현행 형소법 제421조).

라. 기타 개정 사항

일반 규정에 있어 첫째, 형사사건의 병합의 경우 군수재판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이나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군수기관 종업원과 함께 군수비밀보장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수부문 법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구 형소법 제38조, 현행 형소법 제91조 제3항). 둘째, 사회적 교양처분에 있어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성년자의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였다(구 형소법 제67조, 현행 형소법 제120조 제2항).

예심에 있어서는 첫째,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이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 형소법은 예심을 종결한다고 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150조 제2항). 현행 형소법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형소법은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 등의 중요한 예심행위는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현행 형소법 제149조 제2항). 둘째, 증인 구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구 형소법 제227조, 현행 형소법 제228조). 셋째, 예심 종결 시 권리를 침해당한 북한 주민들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였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 피심자, 피심자의 보증인이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구 형소법은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처리 주체로 예심위원만을 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260조). 이에 비해 현행 형소법은 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처리 주체로 검사를 추가 하면서 검사가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검찰소장에게 의견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현행 형소법 제259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 권리 의식이 점차 증진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심 재판의 경우 첫째, 법정 가운데 국장을 걸고 그 아래에 국기를 드리운다는 규정과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재판복을 입는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재판서기의 위치는 재판소 성원(판사와 인민참심원) 옆에서 주석단 아래의 가운데자리로 변경되었다(구 형소법 제280조, 현행 형소법 제279조). 둘째, 재판준비 시 사건기록의 검토내용에서 규정되어 있던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피심자의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항목이 현행 형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구 형소법 제290조, 현행 형소법 제289조). 셋째, 기소 변경사유를 구 형소법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형법조항

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로 규정하였다(구 형소법 제335조). 이 규정에 따르면 기소된 피소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는 기소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현행 형소법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를 기소 변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현행 형소법 제334조). 이 규정에 따르면 기소된 피소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도 기소 변경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기소변경 시기에 있어 제1심 재판준비 및 재판심리와 제2심 재판심리 외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구 형소법 제337조, 현행 형소법 제335조).

제2심 재판에 있어 제1심 재판소의 판결을 제2심 재판소가 직접 고치는 사유에 ‘손해보상청구심리에서 사실인정은 올바르게 하였으나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를 추가하였다(구 형소법 제279조, 현행 형소법 제378조).

2. 최근의 동향과 실태

북한 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수사정보화와 간접증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공개처형의 최근 양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가. 수사정보화 강조

북한 학자는 범죄수사의 정보화를 강조한다. 범죄수사 정보화란 “범죄수사의 전 과정을 정보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과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범죄수사의 질적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범죄수사 정보화의 목적은 첫째,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

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책과 전술적 방안을 세우는데 있으며 둘째, 범죄수사일군들이 복잡하고 노력이 많이 드는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진행하는데 있다고 한다.²⁵⁸⁾ 범죄수사정보체계는 첫째, 범죄수사정보체계 수립에 이용되는 자원에 따라 인적자원,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자료자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인적자원에서는 사건취급처리일군과 정보체계전문가, 프로그램설계와 장치조작자들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드웨어자원은 컴퓨터, 각종 정보조종장치, 원격통신설비 등 물리적 장치와 재료들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자원에는 컴퓨터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조종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보처리기술 및 설명서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자료자원은 범죄수사정보체계 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외적 특징자료, 범죄수법 및 수단자료, 지문자료, DNA자료, 사건조사경험자료, 외부환경자료 등 범죄수사정보체계 기능 수행에 이용되는 자료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둘째, 정보체계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기능부분체계와 보장부분체계로 구성된다고 한다. 기능부분체계란 정보체계의 기능수행의 측면에서 본 범죄수사정보체계 구조로서 실제적인 구성요소와 그것들의 결합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의 내용에 따라 가상적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한다. 보장부분체계는 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본 범죄수사정보체계 구조로서 방법론적 보장부분체계, 범죄수사학적 정보보장부분체계, 기술수단보장체계, 프로그램보장부분체계 등 여러 보장 수단들과 이것들의 총체로 이루어진다고 한다.²⁵⁹⁾ 그러면서 범죄수사정보체계의 효과성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⁶⁰⁾

나. 간접증거의 강조

북한형소법상 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사실과의 증명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된다. 직접증거는 조사확정하려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반면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간접증거의 범위는 매우 넓으나 일반

258) 장철준, “범죄수사정보화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36쪽.

259) 장철준, “범죄수사정보체계의 구성”,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 42쪽 이하.

260) 장철준, “범죄수사정보체계의 효과성평가”,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4호, 2013, 40쪽 이하.

적으로 범행동기, 시간과 장소, 도구와 수단,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부분적인 사실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속하며, 그 자체로는 직접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야 증거적 의의를 갖는다.²⁶¹⁾

간접증거의 이용 문제는 증거법이론이나 실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검찰과 재판 실무에서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가 많이 제출되며, 간접증거의 이용이 범죄를 밝히고 범죄자를 적발함에 있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접증거의 장점은 첫째, 절대적인 객관성에 있다고 한다. 그 예로서 범죄현장에 있는 발자국, 범죄혐의자에게 있는 싸운 흔적과 옷에 묻은 피, 죽은 사람의 손에 쥐여 있는 머리카락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인위적이지 않다는 데에, 다시 말해 확실성에 있다고 한다. 반면 간접증거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간접증거는 조건부적이며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에 따라 의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간접증거의 이용에서는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연관을 바르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둘째, 간접증거는 직접증거처럼 확정하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증거를 이용할 경우 편견과 선입견을 경계하고 간접증거의 평가 및 적용에서 공정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²⁶²⁾

다.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양태 변화

북한 형사소송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많은 경우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나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²⁶³⁾ 또한 공개재판에서 형벌이 확정되는지, 아니면 공개재판 이전 또는 이후에 재판소에서의 재판으로 형벌이 확정되는지에 실태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현지공개재판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있다.²⁶⁴⁾ 이와 같은 공개재판의 실태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에도 현지공개재판에 규정을 두고

261) 장철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4호, 2012, 36쪽 이하.

262) 리황, “사건취급처리에서 간접증거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38쪽

263)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194쪽 이하.

264)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71쪽 이하.

있다(현행 형소법 제285조).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공개처형의 변화 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공개처형 빈도가 주춤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 및 그 이후의 권력 승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별로는 함경북도 지역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면접대상자들의 출신지역이 함경북도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공개처형 사유에 있어 2011년 이후부터 마약 거래가 가장 빈번한 공개처형 사유로 증언되고 있다. 이는 2012년 개정된 현행 북한 형법 제208조에 마약범죄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⁶⁵⁾

라. 외국인 재판 및 판결 집행

지금까지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미국 국적의 유나 리(Euna Lee)와 로라 링(Laura Ring), 아이잘론 말리 고크즈(Aijalon Mali Gomes), 케네스 배(Kenneth Bac, 한국명: 배준호), 매튜 토드 밀러(Matthew T. Miller)와 한국 국적의 김정욱 등 5건의 6명이다. 유나 리와 로라 링, 고크즈의 재판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였지만 최고지도자가 되기 전, 다시 말해 김정일 생존 당시에 재판이 있었고,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김정욱에 대한 재판은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에 있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재판 및 판결 집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구 중앙재판소 포함)에서 열렸다. 유나 리와 로라 링은 2009년 6월 4일, 고크즈는 2010년 4월 6일, 케네스 배는 2013년 4월 30일, 김정욱은 2014년 5월 30일, 매튜 토드 밀러는 2014년 9월 14일일 각각 최고재판소에 재판을 받았다. 이는 외국인들의 불법행위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고재판소의 제1심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마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⁶⁾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은 1심으로 마치며, 상소가

265)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114쪽 이하.

266)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4, 223쪽.

불가능하다(북한 형소법 제358조).

둘째,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유나리와 로라 링에게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하여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하였다. 고프즈에게는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하고 노동교화형 8년과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케네스 배에게는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여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 매튜 토드 밀러에게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적용하여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하였다.

셋째,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후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였을 때의 외국인 재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나리와 로라 링의 경우 노동교화형 12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2009년 8월 4일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였고, 다음날 북한은 두 여기자에게 특사를 실시하였다. 고프즈는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으로 석방되었다. 반면에 케네스 배는 2013년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하여 교화생활을 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4년 5월 30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아직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매튜 토드 밀러는 재판 이후 노동교화소에서 하루 8시간 농사일을 하고 있다.²⁶⁷⁾ 이와 같이 북한이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후 특사 형식으로 외국인을 석방하지 않고 형사판결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기독교 전파 행위를 체제 전복 행위로 간주하여 강경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케네스 배는 2012년 11월 3일 북한 라선시에 불법 입국하다가 체포되었는데 북한은 그의 선교행위를 정권붕괴를 부추기는 범죄행위로 간주하였다.²⁶⁸⁾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서는 지하교회 활동 등을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와 국가 안전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²⁶⁹⁾ 그의 활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터뷰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²⁷⁰⁾ 매튜 토드 밀러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관공증을 찢고 망명을 신청하는 등 범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되어 재판을 받았다.²⁷¹⁾

267) 미국의소리<www.voakorea.com>, “북한 억류 미국인 밀러, 가족과 통화 모습 공개”(보도일: 2014. 9. 25).

268) 조선중앙통신, 2013. 5. 9.

269) 조선중앙통신, 2014. 5. 31.

270) 평양방송, 2014. 2. 27; 평양방송, 2014. 4. 14

넷째, 미국 시민들에게는 영사접근권을 인정하는 반면 한국 국적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유나 리와 로라 링, 곰즈, 케네스 배에게는 이익대표국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권을 인정하였다. 재판은 받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무단 입국하였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과 2010년 11월 체포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의 경우에도 영사접근권을 인정받았다.²⁷²⁾ 다만, 매튜 토드 밀러의 경우에는 재판에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방청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²⁷³⁾ 조사과정에서도 영사접근권이 인정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반면에 한국 국적의 김정옥 선교사는 영사접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3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137일 만에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도 영사접근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영사접근권은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도 하는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국 국민과 통신 및 접촉을 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말하며,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보호국(또는 이익대표국, protecting power)을 통해 영사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²⁷⁴⁾은 영사기능의 하나로 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제36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2001년 미국과 독일 간의 LaGrand 사건, 2004년 미국과 멕시코 간의 Avena 사건, 미주인권재판소(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CHR)의 1999년 권고적 의견 등에서 영사접근권을 국가의 권리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라고 판시하였다.²⁷⁵⁾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영사접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영사접근권 침해에 해당된다.

271) ‘반공화국적대범죄행위로 노동교화형을 복역하던 중 지난 11월 8일에 석방되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90127221&code=910303, “북한 케네스 배 등 억류 미국인 2명 석방”(보도일: 2014. 11. 9.)

272)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35쪽 이하.

273) 미국의소리<www.voakorea.com>, “북한, 억류 미국인 재판에 스웨덴 영사 참관 불허”(보도일: 2014. 9. 16).

274)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275)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33쪽 이하.

〈표 4-21〉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구분	국적	재판	재판소	죄 목	영사 접근권	판결	집행
유나 리 로라 링	미국	2009.6.4	중앙 재판소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인정	로동교화형 12년	특사
곰즈	미국	2010.4.6	중앙 재판소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인정	로동교화형 8년, 벌금 7,000만원	특사
케네스 배	미국	2013.4.30	최고 재판소	국가전복음모죄	인정	로동교화형 15년	교화 생활
김정욱	한국	2014.5.30	최고 재판소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불인정	무기로동교 화형	교화 생활
매튜 밀러	미국	2014.9.14	최고 재판소	반공화국적대행위	재판참관 불허	로동교화형 6년	교화 생활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

박 학 모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

“형법은 형사정책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하는 현대형법학에 통용되는 “형법과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관계”에 대한 명제와 관련하여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이 보여주는 답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일컬어지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 나아가 노동당의 형사정책이 초법규적 규범의 기능을 하며 형법과 형사사법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형법, 즉 북한형사실체법의 개정을 개관하고 현행 북한형법을 ‘이해’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주체의 형법이론’에 토대를 둔 사회주의형법으로서의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극으로 치달던 시기인 1974년 형법개정과 일부 ‘반동성’을 보인 형법개정을 제외하면 북한형법 또한 ‘의외로’ 현대형법으로의 큰 물줄기를 따라 변화·발전하며 진화해 온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현실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실현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에서 뒤늦게 논의된 ‘재사회화형법’, ‘회복사법적 형법’의 맹아들도 북한형법과 형사사법에 배태되어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주의형법의 암덩어리처럼 비난받아온 유추규정이 폐지되고 죄형법정주의가 명시되고 형법각칙의 구체화, 명확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며 그 시너지효과로 순화된 ‘사회적 위험성’ 개념과 표지도 부분적으로 비범죄화의 영역을 비롯하여 형사정책적 순기능의 잠재력을 보이며 법치국가적 법익론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규정을 폐지하고 죄형법정

주의를 도입하는 등 형법을 현대법치국가적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팔목할만한 입법을 단행하여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일반범죄 가운데 사형해당범죄를 대폭 확대하고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선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반동적 입법행보”를 거듭하고 우려를 자아내었으나, 2012년 각론분야의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전반적으로 형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범죄분야에서 두드러져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처벌의 완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으며 집권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사실체법, 즉 북한형법의 발전양상과 사뭇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 북한 형사사법의 현실이다. 물론 형사재판의 실태에 있어 공개처형이 형사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고, 일부 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피소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 아니라 유나 리 재판의 경우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절차가 대체적으로 준수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인민보안부 포고에 의해 공개처형하고 있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도 여전히 강하다. 영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인 유나 리에게는 보장하고 남측 주민에게는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문제도 북한 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법치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형사사법의 모습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의 핵심적 요소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동시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이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회정책이 최고의 형사정책”이기 때문이다.

헌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강제노동에 있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가서 노동단련형을 받는 경우와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 등에서 노동단련을 받는 경우의 2가지가 존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치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처벌로서의 노동단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정치범 판결을 한다는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이 증언이 사실인 경우 정치범과 일반범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정치범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 북한 형사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지의 여부, 보위부 사건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지, 상소는 가능한지의 여부 등이 추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형사재판제도인 군사재판제도와 철도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 이 제도들과 정규 재판제도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지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관계라든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검찰, 인민보안기관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과 관련된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와와의 연결고리도 규명되어야 한다. 특별형사제도인 행정처벌 및 인민보안단속제도와 유사재판제도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및 동지심판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재판제도와 특별형사제도가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다면 작동 메커니즘은 어떤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소 알려진 문제적 사안 뿐 아니라 전혀 알려지지도 소개되지도 않은 북한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손해보상제도와 의료처분과 같은 제도의 실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예비 연구로서 이 연구과제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형사사법통합이라는 먼 길을 향한 작은 출발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 권승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률 제57권 제3호, 2011, 102-105.
- 권영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이매진, 2011.
- 권오걸,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법적연구-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 (VI) -경제·사회·인권실태 분야, 통일원, 1991, 393-460.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창비, 2013.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0-34, 1-19.
- 김경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55권 제2호, 2009, 104-108.
- 김덕일, “인민참심원제도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3-34.
-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34권, 한국법사학회, 2006, 285-319.
-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2005, 446-513.
-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집(6), 법원행정처, 2007.
- 김석철, “사회적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규제한 공화국형법상제도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5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4, 39.
- 김수압,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통일연구원, 2005.
- 김수압·이금순·이규창·조정현·한동호,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통일

연구원, 2013.

김수영, “형벌적용의 목적에 대한 과학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11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4, 36.

김억락·한길, 국가와 법의 이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김영철, “북한형법상 형벌의 변화”, 법조 통권 제566호, 법조협회, 2003, 5-46.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259-300.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57-94.

김일수, “북한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69-203.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창도, “통일대비 남북한 형사법 비교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 - 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

김혁철, “우리 공화국 인민참심원제도의 발생발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60권 제1호, 2014, 108-111.

김혁철, “인민참심원제도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인 재판담당자제도”, 정치법률연구 2011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8-39.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북한인권백서(White Paper on Human Rigehts in North Korea),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4.

렴정철,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선거권박탈형에 대한 과학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1-42.

렴정철,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재산몰수형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36-37.

리광일,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그 해독성”,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

-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7-38.
- 리광일, “형법규범효력의 본질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1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2-33.
- 리명일,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2권 제2호.
- 리명일, “새롭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선군정치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6권 제2호, 2010.
- 리문성,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31-33.
- 리성일, “배심제도의 존망을 둘러싼 부로조아지들의 논의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6권 제4호, 2010, 143-148.
- 리수영, “국가자주권존중의 원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4권 제3호사, 1998, 61.
- 리영철,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혁명적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령도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11-13.
- 리정준, “형사책임의 특징”,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34-35.
-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에 규제된 사회적 교양처분제도와 그 정당성”,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35, 37.
-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29-30.
- 리철광, “행정처벌의 본질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0, 42.
- 리황, “사건취급처리에서 간접증거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38, 40.
- 명금철, “공화국법제정사업이 가지는 중요성”,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4-35.
- 문병갑, “공화국재판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1-42.

- 문병갑,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변호인활동의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40-41.
-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 연구』, 한울 아카데미, 2008.
- 박강우,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박상기·신동운·손동권·신양균·오영근, 형사특별법론: 5대 형사특별법(개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박상철·김창규·김명연, 통일법제연구(Ⅲ): 북한법률용어의 분석(Ⅱ)-형사법 편-, 한국법제연구원, 1996.
- 박영수, “국제민용항공에서 항공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7권 제3호, 2001, 74.
- 박윤훈, “북한 행정처벌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북한법연구 제10호, 북한법연구회, 2007, 27-52.
- 박은정, “북한법 기본원리와 통일법이념 모색”, 북한연구 창간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실, 1998, 84-115.
- 박정기, “비교법의 성과로서의 사법의 국제적 통일”, 법학논고 제4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145-182.
-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 2010, 225-259.
- 박찬호,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박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3권 제1호, 2007.
-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29-76.
-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 법무부,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1996.
- 법무부, 북한법연구(VII) -신형법-, 법무자료 제128집, 1990.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형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69집, 1993.

- 법무부, 중국형사법, 2008.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법원행정처, 1995.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법원행정처, 1996.
-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법원행정처, 2006.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법제자료 제157집. 북한법제자료 제1호, 1991.
-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은창문화사, 199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1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1.
- 석철원, “인권기준에 대한 주체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0-31.
- 손철준, “사회주의검찰감시조직지도방법의 본질과 기본요구”, 정치법률연구 2005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32-33.
- 손철호, “인민정권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필수적요구”, 정치법률연구 2011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1, 33.
- 손희두·박정원, 북한법령용어사전(Ⅱ)-형사법편-, 한국법제연구원, 2003.
-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 자료집, 법제처, 2012, 104-123.
- 승명수, “사회개조사업에 대한 주체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19-21.
- 신광일, “공화국비상상소심제도는 국가의 통일적인 법집행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30-31.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 신명근, “외국형법에서의 형벌체계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58권 제4호, 2012, 125-129.
- 신명근, “죄형법정주의의 반동성”,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51-52.
- 신충룡, “범죄적주관에 대한 과학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38-39.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안소율, “북한의 재판제도,”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 엄상익, “제4차개정 북한형법: 반혁명분자 억압하기 위한 무기역할”, 북한 통권374호, 북한연구소, 2003, 130-139.
- 오경식, “북한 형사법에 대한 일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5집, 강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 53-74.
- 유영태, “공화국형사재판에서 노는 변호인활동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28-29.
- 윤대규, “2004년 북한 개정형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365-384.
-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윤대규,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북한법연구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5.
-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북한법연구회, 2003, 19-32.
- 윤문혁, “범죄예방에 관한 부르조아형법리론의 반동성”,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51, 55.
- 윤영관 편저, 북한의 오늘, 놀품플러스, 2014.
- 이규창, “김정은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 특징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통권 제17호, 법무부, 2014, 7-35.
- 이규창,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통일과 법률 통권 제19호, 법무부, 2014, 13-40.
-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 이금순·김수암·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통일연구원, 2013.
- 이덕인,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57-285.
- 이백규, “북한의 1999년 형법개정의 의미와 평가”, 인권과 정의 2003년 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3
-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61집 1권, 육군사관학교, 2005, 179-217.
- 이장희(편),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개.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8권,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4.

- 이태언, “러시아 형법의 개관”, 비교법학 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3, 63-84.
- 이해정, “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인문과학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 1973.
- 인민보안성(리윤기 외), 법무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 임혁백, “통일한국의 헌정제도 디자인”, 아세아연구 통권 제10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9, 301-335.
-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0, 341-377.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평가,”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5), 법원행정처, 2006.
- 장성철, “검찰, 재판활동에서 정책적대, 법적대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요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3권 제2호, 2007, 54-59.
- 장성철, “공화국형벌의 종류설정에 나서는 원칙적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57권 제3호, 2011, 106-108.
- 장성철,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검찰, 재판기관의 중요과업”, 정치법률연구 2007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29-30.
- 장성철, “형벌집행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8-39.
- 장성철, “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60권 제1호, 2014, 116-120.
- 장성철, “형사책임의 개념에 대한 외국형법리론의 제한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59권 제4호, 2013, 150-154.
- 장영민·이건호, “남북한 통일과 형법통합”,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5-26.
- 장철준, “범죄수사정보체계실현에서 나서는 공정별내용”,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47-48.
- 장철준, “범죄수사정보체계의 구성”,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2-43.

- 장철준, “범죄수사정보체계의 효과성평가”,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4호,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13, 40-41.
- 장철준, “범죄수사정보화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과학백과
사전출판사, 2009, 36, 38.
- 장철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4호,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12, 36-37.
- 장청송, “자본주의국가의 배심제도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
55권 제1호, 2009.
- 정광진, “북한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승환, “북한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체제 내외적 평가-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을 중심
으로-”, 안암법학 통권 제32호, 안암법학회, 2010, 117-142.
- 정응기,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4
호, 2010, 219-243.
- 조광협, “봉건국가형벌의 계급적본질”,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2012, 51-53.
- 조광협, “자본주의국가형벌의 계급적본질”,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4호,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10, 55-56.
- 조병천, “공화국변호사의 사명”,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2-43.
- 조병천, “공화국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지위”, 정치법률연구 2012년 제2호, 과학백과
사전출판사, 2012, 35-36.
- 조병천, “형사사건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선군시대 검찰, 재
판기관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6권
제4호, 2010, 108-110.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법리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1980.
-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2014.
-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
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33-34.

- 조은향, “배심제도의 발생에 대한 고찰”,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43-44.
- 최은석, “북한과 중국의 행정처벌법에 관한 비교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1-2호, 한국공법학회, 2008, 389-418.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통일교육원, 2007.
- 통일연구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북한인권 자료집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통일연구원, 2014.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2014.
-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한올아카데미, 2008.
- 한영서, “국가자주권존중은 국제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4권 제1호, 2008, 66.
-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 북한법연구 제8호, 북한법연구회, 2005, 111 ~ 152.
- 허경일, “법을 규제력있게 만들기 위한 기술실무적요구”,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1-32.
- 허만·신현운·이갑수·윤영득, 동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집문당, 1993.
- 현웅삼, “국가의 법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정치법률연구 2014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5-36.
- 황금철, “공화국형벌량정의 본질적특성”, 정치법률연구 2013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5-47.

나. 외국문헌

-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Chirikin, V./Yudin, Y./Zhidkov, O. (송주명 역),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도서출판 새날, 1990.
- Hiram E. Chodosh, Comparing Comparisons: In Search of Methodology, 84 Iowa L.

Rev. , 1999, 1025.

Gerats, H./Lekschas, J./Renneberg, J. (Hrsg.), Lehrbuch des Strafrech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llgemeiner Teil, Berlin, 1957.

Lee, Euna, The World is bigger now : an American journalist's release from captivity in North Korea... a remarkable story of faith, family, and forgiveness, New York, 2010.

Pierre Lepaulle, The Function of Comparative Law with a Critique of Social Jurisprudence, 35, Harv. L. Rev., 1992, 838.

Ministerium der Justiz (DDR) (Hrsg.), Straf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erlin, 1984.

Pashukanis, E.-B. (박대원 역), 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 : 법률적 기초개념에 대한 비판의 시도, 신서원, 2008.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PR.1(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7/10(2 July 201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19/PRK/1(30 January 2014),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Zusammenfassung /Abstract



Untersuchung zur aktuellen Lage des nordkoreanischen Strafjustizsystems (Vorstudie zur strafjustiziellen Rechtsvereinheitlichung bei Wiedervereinigung von Süd- und Nordkorea)

Hark-Mo Daniel PARK (KIC)

Dr. Dae Keun KIM (KIC)

Dr. Kyu-Chang LEE (KINU)

Die vorliegende Arbeit beabsichtigt nicht ein vollständiges Bild von der nordkoreanischen Strafjustiz zu zeichnen, sondern versucht vielmehr mit einem verstehenden Blick an sie heranzugehen. Denn es fehlt nicht an solchen Untersuchungen, die einerseits die tiefe Kluft zwischen Theorie und Praxis in der nordkoreanischen Strafjustiz offenbaren und andererseits auf die scheinbar unüberbrückbaren Unterschiede in der süd- und nordkoreanischen Strafjustiz hinweisen. So gelangen fast alle bisherigen Studien zur strafjustiziellen Rechtsvereinheitlichung von Süd- und Nordkorea letztendlich zu einem pessimistisch geprägten Schluss, dass die Rechtseinheit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ei Wiedervereinigung schwer zu erreichen sei, es sei denn, dass sich das sog. „Beitrittsmodell“ wie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urchsetzt.

Ohne sich selbst zu relativieren, wenn nicht zurückzustellen, ist also ein Durchbruch zur Verständigung für die Rechtseinheit kaum zu finden. Die Selbstrelativierung bzw. Selbstreflektierung erweist sich als einen Weg, worüber man

sich ungeachtet zahlreicher krasser Unterschiede und Heterogenitäten nähern und überhaupt zur Verständigung einschreiten kann. So befasst sich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zuerst mit der Rechtsvergleichung, wobei es einerseits um allgemeine Eigenschaften der sozialistischen Strafjustiz geht und andererseits jeweils um eine besondere 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Strafjustiz in den jeweiligen real existierten sozialistischen Ländern. Anhand dieser Ergebnisse der rechtsvergleichenden Betrachtung kann man dann die nordkoreanische Strafjustiz im sozialistischen Kontext verstehen.

Um die Lage der nordkoreanischen Strafjustiz einigermaßen vernünftig einschätzen zu können, muss man einen Blick auf die Rechtsquelle der nordkoreanischen Strafrechts werfen. Die nordkoreanische sozialistische Verfassung beansprucht scheinbar ihre Rolle als die erste Rechtsquelle des Strafrechts, was in einem Rechtsstaat selbstredend wäre.

Positiv zu bewerten ist dabei z.B., dass die nordkoreanische sozialistische Verfassung 2009 erstmals in ihrer Verfassungsgeschichte Achtung vor und Schutz der „Menschenrechte“ zum Ausdruck bringt. Die nordkoreanische Verfassung enthält im Übrigen die meisten Leitprinzipien des nordkoreanischen Strafprozesses. Allerdings genießen Lehre von Kim Il Sung und Worte von Kim Jung Il sowie Leitlinien der Partei der Arbeit Koreas(PdAK, Joseon- Rodong-Dang) eine außerordentliche faktische Geltung, so dass hier von einer „über die Verfassung stehenden,, Rechtsquelle die Rede ist.

Seit das nordkoreanische Strafgesetzbuch(nkStGB) im Jahre 1950 erlassen wurde, waren lange Zeit seine Änderungen und Reformen nach außen nicht bekannt gewesen. Dennoch wurden einige bedeutende Änderungen im nkStGB inzwischen bekannt, zumal Nordkorea nunmehr auch eine offizielle Gesetzestextsammlung herausgibt.

Hier geht es um nkStGB-Änderungsgesetze von 1974, 1987, 2004 und 2012. Bis auf die nkStGB-Änderung im Jahre 1974 ist die nordkoreanische Strafrechtsreform insgesamt und zumindest theoretisch als einen langwierigen Fortschrittsprozess zur

Liberalisierung des Strafrechts zu bezeichnen. Nach wie vor ist die nordkoreanische Kriminalpolitik durch eine dualistische Sanktionenpolitik geprägt, in der der Staat gegen das politische Verbrechen bzw. die Systemgegner mit aller Härte nach der Vergeltungslehre vorgeht, während man gegen Alltags- bzw. Kapitalverbrechen relativ mild nach der Besserungsideologie reagiert.

Im nkStGB bildet die Strafrechtsreform 2004 einen Wendepunkt. Der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wurde erstmals ins StGB verankert und die Analogie-Vorschrift wurde gestrichen. Im Gegenzug wurde das Bestimmtheitsgebot in den BT-Tatbeständen entscheidend gestärkt, so dass deren Zahl bei der Neuordnung verdoppelt wurde. Der Schwerpunkt im BT wurde vom Staatsschutz auf den Schutz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hin verschoben. Hier spiegelt sich auch die gesellschaftliche Veränderung in Nordkorea wieder, wobei das wirtschaftliche Leben im Strafrecht mehr Gewicht erhalten hat.

Die Eigenartigkeit im nordkoreanischen Strafrecht ist, dass nkStGB das einziges materielles Strafrecht darstellt, denn es gibt sonst keine Strafgesetze mehr in Nordkorea. Es ist ein krasser Unterschied im Vergleich zum südkoreanischen Strafrecht, wobei uferlose zahlreiche Nebenstrafgesetze existieren und zum Teil die Kriminalpolitik des StGB auszuhöhlen drohen.

Die Strafrechtsreform 2012 ordnet einige wirtschaftliche Tatbestände neu und geht gegen Wirtschaftstaten härter vor, während der gesetzliche Strafraum im Großen und Ganzen herabgesetzt wurden. Dies kann eine symbolische Geste in der Anfangsphase der Kim Jung Eun Herrschaft sein, was in der Bevölkerung eine positive Erwartung für eine neue Ära einsetzen lassen sollte.

Es gab zwar Fortschritte im nkStGB und in der Gestaltung des Strafprozesses. Aber die Praxis der nordkoreanischen Strafjustiz ist eine andere Sache als die Gesetze und die Theorie. Die Todesstrafe wurde zahlreichen Beobachtungen zufolge in der Öffentlichkeit grausam vollstreckt. Die Unabhängigkeit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ist nicht gewährt, denn das Strafverfahren wird unter Aufsicht der Staatsanwaltschaft durchgeführt. Fraglich ist auch der Rechtsschutz für die

Angeklagten im Verfahren.

Interessante Rechtsinstitutionen im nkStGB wären das Adhäsionsverfahren für Wiedergutmachung bzw. Schadenersatz und die medizinischen Maßnahmen, worüber jedoch kaum Kenntnisse bislang bestehen. Solche Institutionen können bei der Rechtsvereinheitlichung bzw. dem Ausbau einer neuen Strafjustiz nach der Wiedervereinigung neu beleuchtet werden. So gesehen stellen diese neue Forschungsgegenstände im nordkoreanischen Strafrecht dar.

연구총서 14-AA-11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

발행 | 2014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박상옥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7,000원
인쇄 | 범신사 (02)503-8737
ISBN | 978-89-7366-319-4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